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183-10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 인생은 **나눔**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제도

I. 개요	3
1. 목적	3
2. 정의	3
3. 수급권자의 범위	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5. 기초연금액의 산정	5
6. 기초연금액의 감액	6
7. 기초연금 급여액	7
8. 타 제도와와의 관계	9
9. 비용의 분담	9
II. 업무흐름도	10

2. 신청

I. 신청권자	17
1. 수급희망자	17
2. 대리인	19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1
1. 신청방법	21
2. 신청기간	22
III. 신청 구비서류	23
1. 필수 제출서류	23
2. 추가 제출서류	25

IV. 신청 시 안내사항	27
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27
2. 예상급여액 문의	27
3.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	28
4. 지급결정 절차	28
5. 지급방법	29
6. 신고 안내	30
7. 벌칙 안내	31
8.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32
V. 접수	33
1. 가구 구성	33
2. 신청서류 등록	33
3. 접수 방법	34

3. 조사

I. 수급자 선정 개요	39
1. 업무흐름도	39
2. 선정기준	40
II. 조사의 개요	48
1. 조사의 원칙	48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49
3. 조사의 종류	50
4. 자료의 제출 요구	56
III. 조사가구 유형 확정	57
1. 조사가구 구성확인	57
2. 조사가구 유형	57
3. 가구구성과 조사방안	57

IV. 소득조사	60
1. 소득의 의미	60
2. 소득산정 기준	60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1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71
V. 재산조사	73
1. 재산의 소득환산액	73
2. 재산의 종류	74
3. 재산가액 산정기준	75
4. 일반재산 조사	76
5. 금융재산 조사	88
6. 기타(증여)재산 조사	92
7. 부채 조사	98
VI. 수급가구 유형 확정	104
1. 단독가구	104
2. 부부1인 수급가구	104
3. 부부2인 수급가구	104
4. 기초연금액 결정	107

4. 기초연금액 결정

I. 개요	109
II. 기초연금액의 산정	112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112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114
3.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118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118

Ⅲ. 기초연금액의 감액	119
1. 부부감액	119
2. 소득역전방지 감액	119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20
Ⅳ.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27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27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128
3.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129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시 적용기준	131
5.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135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143
1. 지급 결정	143
2. 통지	143
Ⅱ. 기초연금의 지급	145
1. 지급 방식	145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48
Ⅲ. 미지급 기초연금	149
1. 개요	149
2. 청구권자	149
3. 청구절차	150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51
Ⅳ. 수급권의 보호	152
1. 원칙	152
2. 압류방지 전용통장	152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I. 이의신청	157
II.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
III. 행정심판	162

7. 수급자 관리

I. 수급자 사후관리	167
1. 개요	167
2. 업무흐름도	168
II.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69
1. 신고사항	169
2. 신고절차	170
3. 처리기한 및 통지	171
III.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72
IV.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1.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2. 지급정지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9

8. 환수 및 벌칙

I. 기초연금액의 환수	185
1. 개요	185
2. 업무흐름도	186
3. 환수금의 결정	187
4. 징수절차	191
5. 소멸시효	192
6. 결손처분	193
II. 과태료	194
1. 과태료	194
2. 과태료사유 확인	195
3. 과태료 결정	195
III. 벌칙	197

9. 비용의 부담 및 현황관리

I. 비용의 부담	201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201
2. 부담금의 지급	202
3.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	202
4.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203
5. 부담금의 지급	204
II.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05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05
2. 수급자의 현황보고	205
3. 「행복e음」	205

10. 서 식

■ 서식 1 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10
■ 서식 2 호 ■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15
■ 서식 3 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16
■ 서식 4 호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18
■ 서식 5 호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219
■ 서식 6 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20
■ 서식 7 호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23
■ 서식 8 호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24
■ 서식 9 호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25
■ 서식10호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26
■ 서식11호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27
■ 서식12호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29
■ 서식13호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31
■ 서식14호 ■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33
■ 서식15호 ■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34
■ 서식16호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35
■ 서식17호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36
■ 서식18호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37
■ 서식19호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38
■ 서식20호 ■	사용대차 확인서	239
■ 서식21호 ■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40
■ 서식22호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41

11. 부 록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245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250
III.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251
IV.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255
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58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소득평가액 (p3)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 소득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선정기준액 (p3)	<table><tr><th>구분</th><th>단독가구</th><th>부부가구</th></tr><tr><td>선정기준액</td><td>1,480,000원</td><td>2,368,000원</td></tr><tr><td>저소득자 선정기준액</td><td>380,000원</td><td>608,000원</td></tr></table>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table><tr><th>구분</th><th>단독가구</th><th>부부가구</th></tr><tr><td>선정기준액</td><td>1,690,000원</td><td>2,704,000원</td></tr></table>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삭 제>																																																							
기초 연금액의 산정 (p5)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20년 1월~12월</th><th rowspan="2">비고</th></tr><tr><th>일반수급자</th><th>저소득수급자</th></tr><tr><td rowspan="6">기준 연금액</td><td>10%</td><td>25,476원</td><td>-</td><td>최저연금액</td></tr><tr><td>50%</td><td>127,380원</td><td>150,000원</td><td>부가연금액</td></tr><tr><td>100%</td><td>254,760원</td><td>300,000원</td><td>기준연금액</td></tr><tr><td>150%</td><td>382,140원</td><td>450,000원</td><td></td></tr><tr><td>200%</td><td>509,520원</td><td>600,000원</td><td></td></tr><tr><td>250%</td><td>636,900원</td><td>750,000원</td><td></td></tr></table>	구 분		2020년 1월~12월		비고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기준 연금액	10%	25,476원	-	최저연금액	50%	127,380원	150,000원	부가연금액	100%	254,760원	300,000원	기준연금액	150%	382,140원	450,000원		200%	509,520원	600,000원		250%	636,900원	750,000원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2021년</th><th>비고</th></tr><tr><td rowspan="6">기준 연금액</td><td>10%</td><td>30,000원</td><td>최저연금액</td></tr><tr><td>50%</td><td>150,000원</td><td>부가연금액</td></tr><tr><td>100%</td><td>300,000원</td><td>기준연금액</td></tr><tr><td>150%</td><td>450,000원</td><td></td></tr><tr><td>200%</td><td>600,000원</td><td></td></tr><tr><td>250%</td><td>750,000원</td><td></td></tr></table>	구 분		2021년	비고	기준 연금액	10%	30,000원	최저연금액	50%	150,000원	부가연금액	100%	300,000원	기준연금액	150%	450,000원		200%	600,000원		250%	750,000원	
구 분				2020년 1월~12월			비고																																																		
		일반수급자	저소득수급자																																																						
기준 연금액	10%	25,476원	-	최저연금액																																																					
	50%	127,380원	150,000원	부가연금액																																																					
	100%	254,760원	300,000원	기준연금액																																																					
	150%	382,140원	450,000원																																																						
	200%	509,520원	600,000원																																																						
	250%	636,900원	750,000원																																																						
구 분		2021년	비고																																																						
기준 연금액	10%	30,000원	최저연금액																																																						
	50%	150,000원	부가연금액																																																						
	100%	300,000원	기준연금액																																																						
	150%	450,000원																																																							
	200%	600,000원																																																							
	250%	750,000원																																																							
기초연금의 감액 (P6)	● 수급자 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기초 연금액의 산정 (p6)	3) 기준연금액 : 2020년 1월~12월 (일반수급자) 월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300,000원 4) 부가연금액 : 2020년 1월~12월 (일반수급자) 월 127,380원, (저소득수급자) 월 150,000원	3) 기준연금액 : 2021년 월 300,000원 4) 부가연금액 : 2021년 월 150,000원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초 연금액의 감액 (p6)	●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일반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저소득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과 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삭 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p8)	<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내용 일부 수정)															
기초연금 급여액 (p9)	다. 저소득수급자 (내용생략)	<삭 제>															
기초연금 급여액 (p9)	<저소득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내용생략)	<삭 제>															
비용의 분담 (p9)	<추 가>	●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추가지원															
업무 흐름도 (p11)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독가구</th><th>부부가구</th></tr> </thead> <tbody> <tr> <td>선정기준액</td><td>1,480,000원</td><td>2,368,000원</td></tr> <tr> <td>저소득자 선정기준액</td><td>380,000원</td><td>608,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단독가구</th><th>부부가구</th></tr> </thead> <tbody> <tr> <td>선정기준액</td><td>1,690,000원</td><td>2,704,000원</td></tr> </tbody> </table>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업무 흐름도 (p12)	- 수급자 간 및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액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감액,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액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p19)	<table><tr><td rowspan="3">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td><td>혼인하지 않은 자</td><td>×</td><td>대한민국 귀화</td></tr><tr><td>혼인신고 후 2년 경과한 자</td><td>×</td><td>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td></tr><tr><td>혼인신고 후 2년 미경과한 자</td><td>○</td><td></td></tr></table>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2년 미경과한 자	○		<table><tr><td rowspan="3">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td><td>혼인하지 않은 자</td><td>×</td><td>대한민국 귀화</td></tr><tr><td>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td><td>×</td><td>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td></tr><tr><td>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td><td>○</td><td></td></tr></table>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2년 미경과한 자	○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서류 (p20)	<table><tr><th>대리 신청인</th><th>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th><th>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th><th>위임장 징구</th></tr><tr><td>배우자 (사실혼 포함)</td><td>가족관계증명서</td><td>생략 가능</td><td>×</td></tr><tr><td>자녀</td><td>가족관계증명서</td><td>생략 가능</td><td>○</td></tr><tr><td>형제자매 친족</td><td>제적등본</td><td>징구</td><td>○</td></tr><tr><td>사회복지시설장</td><td>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td><td>징구</td><td>○</td></tr></table>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징구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	<table><tr><th>대리 신청인</th><th>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th><th>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th><th>위임장 징구</th></tr><tr><td>배우자 (사실혼 포함)</td><td>가족관계증명서</td><td>생략 가능</td><td>×</td></tr><tr><td>자녀</td><td>가족관계증명서</td><td>생략 가능</td><td>○</td></tr><tr><td>형제자매 친족</td><td>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td><td>징구</td><td>○</td></tr><tr><td>사회복지시설장</td><td>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td><td>징구</td><td>○</td></tr></table>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징구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구	○																																							
온라인 신청 (p21)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p25)	- 부부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 제출이 원칙 - 부부가 양쪽이 동의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원칙) 부부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예외) 「행복e음」을 통해 계좌유효성 확인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은 생략가능 ※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제출 필요 ※ 한쪽 배우자의 계좌만 등록하는 경우,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p25)	〈추 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 불가(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만 가능)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p27)	〈추 가〉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p28)	〈추 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중 안내 거부 의사를 밝힌 자는 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대리수령 지급방법 (p29)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신고 안내 (p30)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신고하여야 함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 안내 (p31)	④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④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사실혼·사실 이혼 포함)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확인 (p40)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소득 인정액 요건 확인 (p47)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단독가구</th><th>부부가구</th></tr> <tr> <td>선정기준액</td><td>1,690,000원</td><td>2,704,000원</td></tr> </table>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내용생략)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삭 제〉
	선정기준액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380,000원	608,000원	
	- (선정기준액) (내용생략) -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내용생략)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적용			
소득 인정액 요건 확인 (p47)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6만원)}+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8만원)}+ 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조사의 대상 및 범위 (p49)	주의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 국민 배우자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혼인 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주의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 국민 배우자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혼인 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 연금 신청 가능
조사내용 (p51)	수급 자격 및 가구 유형	인적 변동	가구 유형 변동 수급 정지 여부 수급권 상실 여부	• 결혼·이혼,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실종, 가출, 해외장기체류 등 •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등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 (p55)	〈추 가〉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중 안내 거부 의사를 밝힌 자는 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부재 시 사후관리 방법 (p59)	주의 배우자 부재 시 사후관리 방법 - 사실(이)혼은 연 1회 이상 사실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 19호)'를 징구			〈삭 제〉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소득 공제금액 (p60)	* 상시근로소득에서 9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근로소득 산정방식 (p62)	나) 산정방식: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96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96\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 2020년 최저임금(8,590원) × 20일 × 5.6시간	● 산정방식: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98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98\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 2021년 최저임금(8,720원) × 20일 × 5.6시간
단순경비율 (p64)	* 2018년 국세청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은 42.6% (매년 3월 말 고시)	* 2019년 국세청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은 42.6% (매년 3월 말 고시)
기타 사업소득 (p65)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 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 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 정수기 방문판매 등, 업종코드 :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¹⁾ 을 적용 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 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사업자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표 참조)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천원 - (40,000천원 × 75.0%)} + {5,000천원 - (5,000천원 × 65.0%)} = 11,750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경로 : 국세청 > 국세 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기타참고책자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하단에 참고자료(표) 추가 >
공적 이전소득의 범위 (p68)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공적 이전소득의 범위 (p6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소득제외 (p68)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액 최고액(38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²¹⁾ 2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공적자료는 장애인연금액 최고액 3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조회되므로 부채·공제란에 추가로 차감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삭 제〉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p72)	〈신 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어업권 (p82~83)	사. 어업권 1)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추 가〉 2) 조사방법 「행복e음」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사. 어업권, 양식어업권 1)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어업권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2) 조사방법 「행복e음」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과 양식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p84)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잔가율) > 취득가액(× 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1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비율 ※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잔가율 : 차령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사망한 배우자 재산반영 (p85)	〈신 설〉	 주의 사망한 배우자의 고급자동차, 회원권, 콘도는 일반재산으로 미등기상속재산 처리지침에 따라 재산반영 이후 상속등기 여부에 따라 P값 반영																		
자연적 소비금액 (p96)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원/월)</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r> </thead> <tbody> <tr> <td>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td><td>3,870,577원</td><td>4,749,174원</td></tr> <tr> <td>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td><td>1,935,288원</td><td>2,374,587원</td></tr> </tbody> </table>	구분(원/월)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	4,749,174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935,288원	2,374,587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원/월)</th><th>3인 가구</th><th>4인 가구</th></tr> </thead> <tbody> <tr> <td>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td><td>3,983,950원</td><td>4,876,290원</td></tr> <tr> <td>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td><td>1,991,975원</td><td>2,438,145원</td></tr> </tbody> </table>	구분(원/월)	3인 가구	4인 가구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3,983,950원	4,876,290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991,975원	2,438,145원
구분(원/월)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3,870,577원	4,749,174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935,288원	2,374,587원																		
구분(원/월)	3인 가구	4인 가구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3,983,950원	4,876,290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991,975원	2,438,145원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p99)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카드론)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결정 절차 (p109)	감액 기준 적용 - 부부감액 : 20% -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감액 기준 적용 - 부부감액 : 20%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 연금액의 감액 (p111)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일반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저소득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저소득 선정기준액과 일반수급자 기준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 〈삭 제〉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p111)	1) 일반수급자 ●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 생략) ●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내용 생략) 2) 저소득수급자 (내용 생략)	●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 생략) ●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내용 생략) 〈삭 제〉
기초 연금액의 산정 (p115)	55) 기준연금액 2020년 1월~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300,000원 56) 부가연금액 2020년 1월~2020년 12월 (일반수급자) 127,380원, (저소득수급자) 150,000원	54) 기준연금액 2021년 300,000원 55) 부가연금액 2021년 150,000원
기초 연금액 (p118)	(참고)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산정 예시 (내용생략)	〈전면수정〉 (참조)
기초 연금액의 산정 (p11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이면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인 경우 저소득자 부가연금액(150,000원) 적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면서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수급권자인 경우 일반수급자 부가연금액(127,380원) 적용	〈삭 제〉
기초 연금액의 산정 (p118)	③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법 제8조제3항] (내용 생략)	〈삭 제〉
기초 연금액의 감액 (p123~ 126)	〈일반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적용 사례〉 (내용생략)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적용 사례〉 〈전면수정〉 (참조)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기초 연금액의 감액 (p126)	나. 저소득수급자 (내용생략)	〈삭 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계산 (p134)	〈추 가〉	· 분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여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분할 전 금액으로 복원 ※ 시행일(2021.1.1.)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한 자와, 수급자(신청종인 자 포함) 중 시행일 이후에 재결합 사유로 분할연금을 포기하는 자의 배우자(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및 적용 (p137)	● 「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제84조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 「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직역연금 (p140)	· 「군인연금법」 제6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 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대리수령 지급방법 (p147)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수급권의 보호 (p152)	〈추 가〉	 주의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기타연금 수령 입류방식형 통장은 기초연금 급여 지급이 불가능
이의신청 위원회 논의사항 (p161)	〈신 설〉	·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중 '중증환자로서 1년이상 치료를 받고 향후 일정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의 의료비를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하는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중점관리 대상 및 분야 (p171)	〈추 가〉	• 85세 이상 고령 수급자																				
환수금의 산정 (p188)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table><tr><th>구 분</th><th>2017년도</th><th>2018년도</th><th>2019년도</th><th>2020년도</th></tr><tr><td>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td>1.1%</td><td>1.6%</td><td>1.8%</td><td>1.2%</td></tr></table>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1%	1.6%	1.8%	1.2%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table><tr><th>구 분</th><th>2018년도</th><th>2019년도</th><th>2020년도</th><th>2021년도</th></tr><tr><td>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td><td>1.6%</td><td>1.8%</td><td>1.2%</td><td>0.8%</td></tr></table>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1%	1.6%	1.8%	1.2%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비용의 분담 (p201~ 204)		〈전면수정〉 (참조)																				
서식 (p210~ 241)	〈개정 서식 반영〉	〈전면수정〉																				
부양가족 연금액 (p246)	※ (2020년 1월~12월 기준) 배우자: 연 261,760원 재·가족부도: 연 174,460원	※ (2021년 1월~12월 기준) 배우자: 연 263,060원 재·가족부도: 연 175,330원																				
물가 연동 (p246)	※ (2016년) 0.7%→(2017년) 1.0%→(2018년) 1.9%→(2019년) 1.5%→(2020년) 0.4%	※ (2016년) 0.7%→(2017년) 1.0%→(2018년) 1.9%→(2019년) 1.5%→(2020년) 0.4%→(2021년) 0.5%																				
소득대체율 (p245)	● 2020년 44.0%	● 2021년 43.5%																				
수급요건 및 급여지급 수준 (p247)		〈내용 일부 수정〉 (참조)																				
국민연금 공단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p252)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가.~마. (생 략) 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 여부 사. 비상징법인 주식 보유자에 대한 휴·폐업 법인의 사업재개 여부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가.~마. (생 략) 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 여부 사. 고령 수급자 수급권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구분 (페이지)	개정 전	개정 후
조사대상 (p255)	※ 사실상 혼인·이혼관계,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지, 타인 계좌 입금 수급자,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등	※ 사실상 혼인·이혼관계,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지, 타인계좌 입금 수급자,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고령 수급자 수급권 확인 등
개요 (p255)	〈추 가〉	● 개인정보의 처리 ·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관련 증빙자료는 「행복e음」으로 스캔 송부 후 1년간 공단보관 후 파기

1

제 도

I. 개요

II. 업무흐름도

1 목적[법 제1조]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법 제2조]

-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¹⁾과 재산의 소득환산액²⁾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법 제3조]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지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지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1) 소득평가액 = {0.7 × (상시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2) [(일반재산 - 기본 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

-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함
-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 기초연금액의 산정 [법 제5조]

-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연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함

구 분		2021년	비고
기준 연금액	10%	30,000원	최저연금액
	50%	150,000원	부가연금액
	100%	300,000원	기준연금액
	150%	450,000원	
	200%	600,000원	
	250%	750,000원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
 -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하는 대상
 -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산정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하 'A급여액')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

$$\{\text{기준연금액}^3)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부가연금액}^4)$$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A급여액과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하여 산식에 적용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연금액의 } 1/2)\} + \text{부가연금액}$$

- 이 경우,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에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산식을 적용 (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크기 때문)
- 부가연금액 산정 대상
 -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6 기초연금액의 감액 [법 제8조]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감액적용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3) 기준연금액 : 2021년 1월~12월 월 300,000원

4) 부가연금액 : 2021년 1월~12월 월 150,000원

7 기초연금 급여액 [시행령 제11조 관련]

1

가. 개요

- (의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
- (방식)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일반수급자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제
도

나.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1)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 부부2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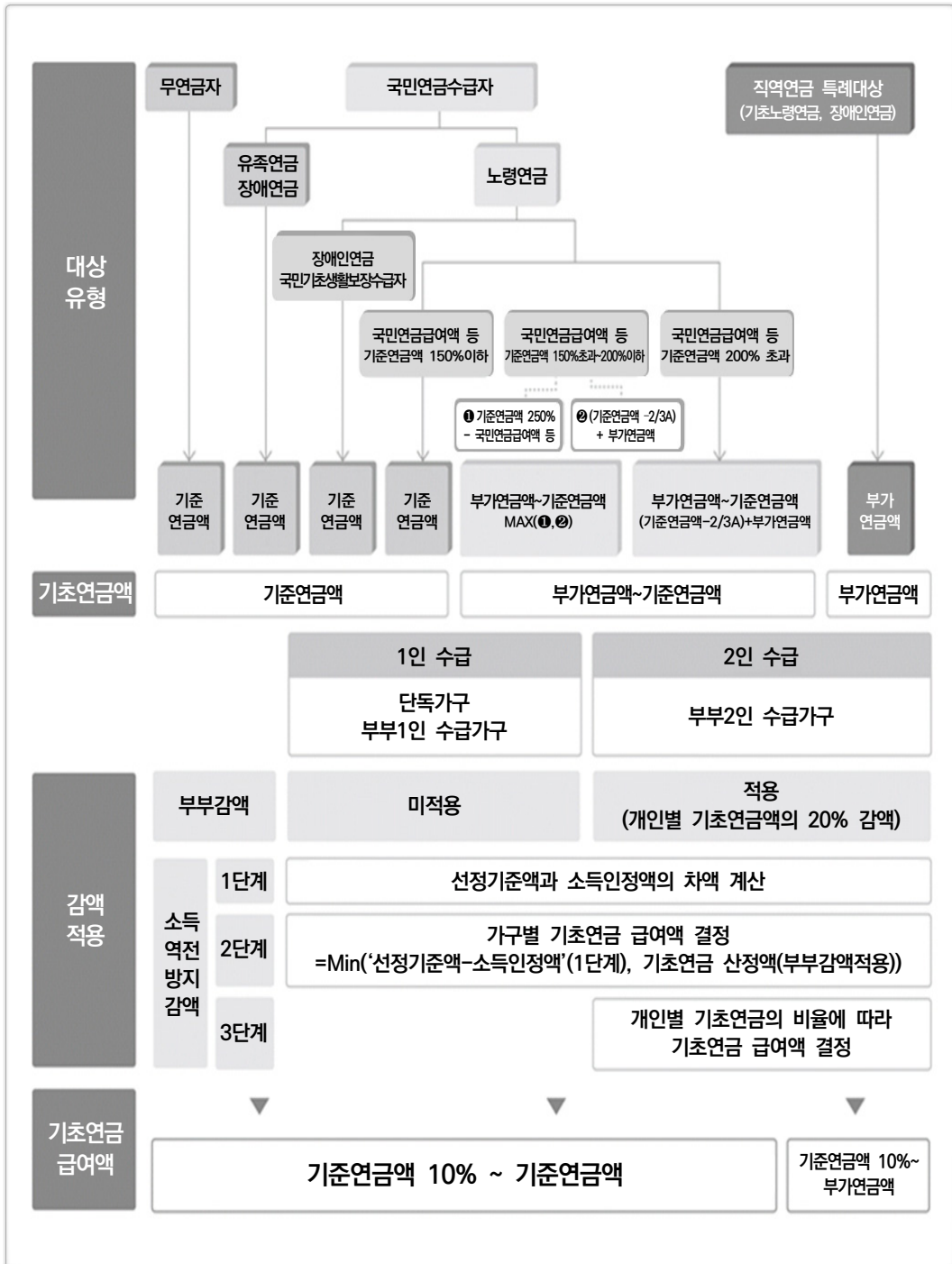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부부2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산정 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8 타 제도와와의 관계

- (직역연금) 직역연금(연금일시금 포함)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 $2/3 \times$ 소득재분배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하며, 국민연금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함(「기초연금법」 제5조 및 제6조)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익활동 유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소득, 가구구성, 활동역량 등)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함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 참조)
 - * 노노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 급식지원 등
- (이동통신료 감면)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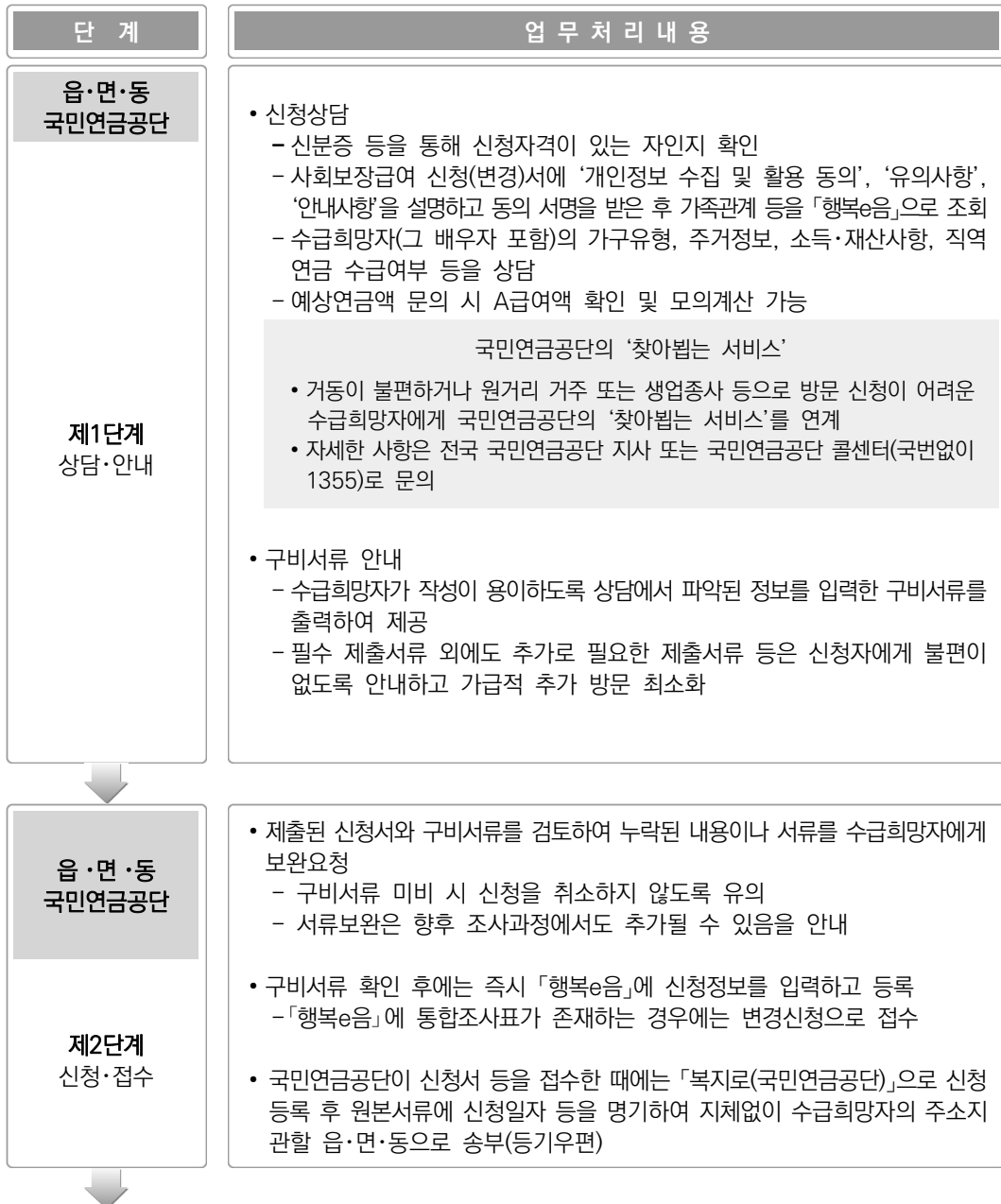
9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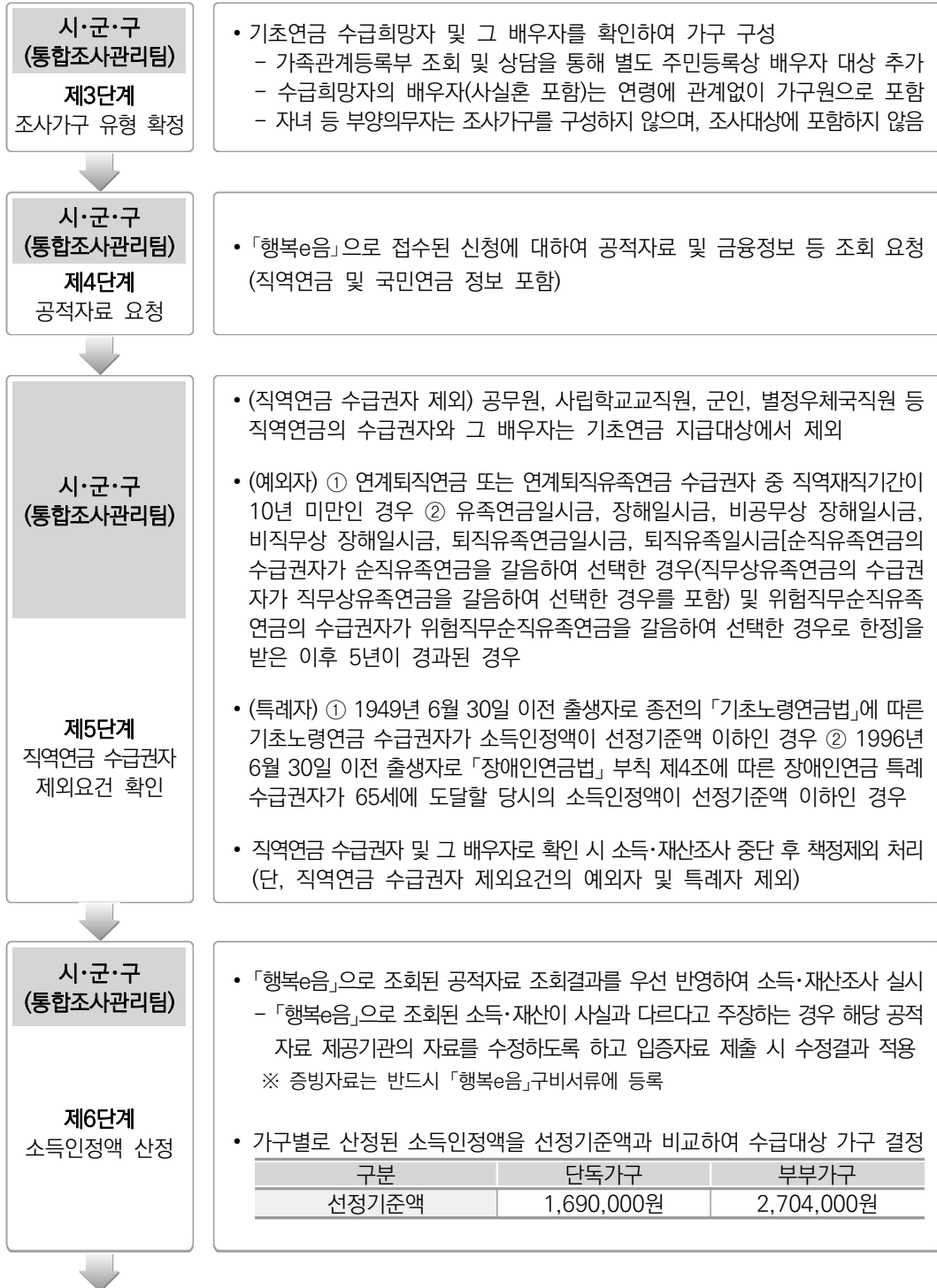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 이상 90%이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시·도와 시·군·구가 상호 분담
 - ※ 부담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나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지출 규모는 비교적 큰 시·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가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추가지원

CHAPTER

II

업무흐름도







시·군·구
(사업과)제12단계
환수·벌칙

-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 환수절차
 - 환수대상 확인 후 징수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고지
 - (기한 내 환수금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시·군·구
(사업과)

이의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식14호)'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
 -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음

2

신 청

I. 신청권자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III. 신청 구비서류

IV. 신청 시 안내사항

V. 접수

CHAPTER

I

신청권자 [법 제10조]

1 수급희망자

2

신청

가. 신청자격이 있는 자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 (주민등록)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 (연령) 만 65세 이상인 자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나.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1)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 ※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가 허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함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⁵⁾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음 (단, '귀화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기초연금을 (재)신청한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신청(수급)자격이 있음)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2) 주민등록 요건

- 주민등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만 65세 이상인 자
 -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로 관리 (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으로 간주하여 처리
 - ※ 추후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상실처리하고 같은 날로 주민등록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관리
-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 가급적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여 거주지 확인이 되도록 안내
- 2015년 1월 22일 이전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참고 수급자격이 없는 자

-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6조 관련]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인 자는 수급자격이 있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자 [법 제17조 관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외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⁶⁾
 - 실종선고자⁷⁾

- 6) 재외국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년 1월 22일 시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 7) 실종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 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민법」 제28조) 살아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처리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수급희망자의 특성에 따른 신청자격 여부 확인〉

수급희망자의 특성		신청자격 여부	신청자격 충족요건
주민등록이 있는 복수국적자		○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귀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한 자	×	대한민국 귀화 또는 귀화허가 신청 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미경과한 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거주불명등록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수용 중인 자		×	출소 및 가석방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실종선고자		×	실종 선고 취소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자		×	행방불명신고 해제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자		×	국내 입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외국 영주권 포기

2 대리인[시행규칙 제6조]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 부부관계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신청 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⁸⁾ 등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 징구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8) 사회복지시설장 : 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 제출받은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내용은 「행복e음」으로 정보등록
화면경로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위임장정보등록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관계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음
 - ※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수급희망자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대리 신청인에 따른 징구서류 및 위임장 징구여부〉

대리 신청인	대리인의 범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한 증빙서류 생략	위임장 징구
배우자 (사실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형제자매, 친족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징 구	○
사회복지시설장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징 구	○

※ 대리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자녀이며, 주민등록세대원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

CHAPTER

II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법 제10조제1항]

가. 방문 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 ※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류(원본)은 지체없이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참고 주소지를 달리 두고 있는 부부가구의 방문 신청 시 업무처리

- A시에 주소를 둔 김복지와 B시에 주소를 둔 나신희는 부부가구로 만 65세 연령이 도래되어 A시에서 동시에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
 - (A시 담당자) 수급희망자 김복지와 나신희에 대한 신청·접수와 조사 및 보장결정 처리
 - ※ 필요 시, B시 담당자에게 조사결과 및 보장결정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
 - (B시 담당자) 보장결정 내용을 변동알림(또는 공문)으로 확인하고 나신희의 급여생성 여부를 확인
- A시에 주소를 둔 김복지는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B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나신희가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여 A시에서 기초연금을 방문 신청
 - (A시 담당자) B시 담당자에게 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등기우편)
 - (B시 담당자) 수급희망자 나신희에 대해 신청·접수와 조사 및 보장결정 후 변동알림을 통해 A시로 보장결정 내용을 통보

나.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화면경로**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대리인(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을 통한 대리신청이 불가
- (지급계좌)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2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CHAPTER

Ⅲ

신청 구비서류

1 필수 제출서류

가. 신분증⁹⁾

- (본인 신청) 신분증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 ※ 수급희망자가 의식불명자(치매, 뇌사 등)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주의 대리인 신청 시 확인사항

- (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시설입소확인서 및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신청위임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 신청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불가 (단, 치매 등으로 신청위임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서류 징구를 통해 확인)
- (국외체류 여부) 수급희망자(본인)의 국외체류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열람 등을 통해 확인
 - ※ 장기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수급희망자의 동의없이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유의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동의 서명을 받은 후 「행복e음」으로 가족관계 등을 조회하여 반영
- 작성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서류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9)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함

다.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재산·부채 항목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행복e음」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라.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함
 - 인감 날인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한글정자) 또는 무인(지장)을 찍도록 안내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자필서명(한글정자), 무인(지장)이 원칙
- (원칙)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예외) 부부가구이지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징구 불가
 - 부재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 단,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
 - (입증서류) 배우자의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 신고접수증, 가출인수배부 등 연 1회이상 제출
 - ※ 배우자 부재 시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사후관리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부가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각각 1장씩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원칙) 부부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
 -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 (예외) 「행복e음」을 통해 계좌유효성 확인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은 생략가능
 - ※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제출 필요
 - ※ 한쪽 배우자의 계좌만 등록하는 경우,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록
-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예금주 조회 후 출력화면을 제출하므로 통장사본 생략 가능
 - ※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시에는 수급희망자(본인) 계좌 통장만 가능

2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적절한 제출기한을 두어 수급권자가 번거롭게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유의
- 또한,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조사·관리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가.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서식4호)

-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 「행복e음」에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제출 여부를 입력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야 함
 - ※ 수급희망 이력관리만 단독 신청 불가(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만 가능)
 -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 불가
 - ※ 기초연금 수급 중 탈락으로 재신청할 경우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다시 신청하여야 함

다.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 수급(희망)자가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사실(이)혼 갈음
※ ‘확인자’는 자녀(필요 시 이·통·반장), 이웃주민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도 가능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 공단으로 현장조사를 의뢰한 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에 갈음하여 처리
※상담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라. 임대차계약서

- 상담을 통해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유효한 임대차계약 사실이 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

마.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

-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대인으로 사용대차를 확인함
※ 수급희망자(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반영
- 임대인이 국외체류·연락두절 등으로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0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은 사실관계 확인 후 사실조사보고서(임의서식)을 작성하여 갈음함

CHAPTER

IV

신청 시 안내사항

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수준, 국민적 정서, 무연금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예외대상과 특례대상을 두고 있음
-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
 -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서도 직역연금 정보가 연계

2 예상급여액 문의

- 신청권자가 예상급여액을 문의하는 경우 「행복e음」의 ‘기초연금 맞춤 정보안내’ 또는 「NPiS」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상담
 - 화면경로**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초연금맞춤정보안내 또는 「NPiS」 > 기초연금 > 상담신청 > 상담관리 > 기초연금 모의계산
- 「행복e음」 A급여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으로 실시간 연계 반영
 - ※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A급여 연계내용 없음
- 예상급여액은 수기로 입력한 금액¹⁰⁾을 기초로 계산함으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
-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 후 수급자 결정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



참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 자가진단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 자가진단
- 노후준비 사이트 「내연금」(<https://csa.nps.or.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10) 가구유형(부부가구, 단독가구), 수급자 수(1인 수급, 2인 수급),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3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 [시행령 제13조의2]

-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
 - (대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기간) 기초연금 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다음 날부터 이력관리 중지때까지
 - ※ (중지 대상) 기초연금 수급권 취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 경과한 자
 -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서식10호)

참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안내사항

- 이력관리를 통한 수급 가능 여부는 전산자료로 통보된 공적자료를 위주로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
- 이력관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인 의사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중 안내 거부 의사를 밝힌 자는 이력관리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4 지급결정 절차 [시행규칙 제8조]

가.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나. 통지방법

- (원칙)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통지
 - 신청접수에 따른 결정통지 : 지급결정통지서(서식6호)
 -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 등

5 지급방법 [시행규칙 제9조]

가. 지급방법

- (원칙)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나. 대리수령 지급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 ※ 종전 민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와 이에 따른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재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이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후견등기제도를 통해서만 공시되므로 반드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상기의 경우는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우선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으로 지급 안내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 대리수령인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공무원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와 대리수령인에게 고지 후 대리수령인 제출서류를 안내

예시 “기초연금 신청자는 ○○○ 어르신이나, 당사자의 희망에 의하여 ○○○ 어르신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본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서식11호)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다. 직접 지급

-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직접 지급하는 경우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철저히 기록·관리

6 신고 안내[법 제18조]

-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하여야 함
 - ① 기초연금 지급정지의 사유[법 제16조제1항]가 소멸한 경우
 - ②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한 때(신고의무자*가 신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

* 동거하는 친족, 동거자, 친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

- ③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¹¹⁾
- ④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신고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연금 지급 계좌 변경,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제출서류

-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수급권 상실 사유 시)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서식13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벌칙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31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9조제3항]

11)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동,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등 사업형태 변동, 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

8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감면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이 감면 제공
 - 월 청구된 이용료가 2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적용
 - 예시 월 요금이 50,000원이면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을 감면받고, 월 요금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된 요금의 50%인 9,000원을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인 본인 명의의 요금에 대한 감면만 가능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신청 시에 이동통신요금 감면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대행)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안내
 - 수급희망자인 경우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서식1호), 수급자인 경우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서식5호)를 통해 신청
 - 화면경로 「행복e음」 > 상담·신청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감면신청등록 또는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감면서비스 통합신청
 - ※ 기초연금 수급자격 취득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적용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접수(대행)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통사 대리점, 통신사 고객센터(핸드폰에서 114),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타 복지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동시에 취득 중인 경우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감면이 큰 자격으로 선택이 가능

CHAPTER

V

접수

1 가구 구성

- 동일 주민등록상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연령에 관계없이 등록
 - 수급희망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를 조회하여 가구 구성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신청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 부부와 노부(모) 세 명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행복e음」 ‘통합조사 및 결정표’는 노부(모)의 ‘단독가구 통합조사 및 결정표’와 부부의 ‘부부가구 통합조사 및 결정표’를 분리하여 가구를 구성
-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동일 가구원으로 추가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의 유무 확인
- 소득·재산 조사 또는 보장결정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라도 사후관리를 위해 「행복e음」 가구구성(제외)사유를 입력하여 등록

예시 사실이혼 배우자의 경우 가구원으로 등록하되 소득·재산 조사대상에서는 제외

2 신청서류 등록

 주의 각종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

- 신청을 취소하지 않도록 유의
 - ※ 「행복e음」으로 신청한 후에 보완된 서류를 등록하여 최종 접수처리
- 수급권자등에게 보완요청을 실시
 - ※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권자등의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징구 [법 제11조제1항 관련]

- 「행복e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록 시에 신청구분에 유의
 - 타 복지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구분을 ‘변경신청’으로 접수

- 사실(이)혼 관계는 수급자 결정(선정기준액, 기초연금액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행복e음」으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록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
 - 배우자 신청여부(□배우자 동시 신청함), 배우자 구분(□법륜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을 체크하여 저장한 후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스캔하여 「행복e음」 구비서류에 등록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행복e음」으로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

3 접수 방법

가.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를 입력·확인 후 신청등록
 -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복지로(국민연금공단)」상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불가 및 서류보완이 완료된 이후 신청 가능함을 안내
 - (추가 제출서류 미비 시) 「복지로(국민연금공단)」상 입력이 가능하므로 당일 신청등록 완료 후 신청서류를 전송하고 차후 서류 보완을 수행하기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공무원과 유선으로 협의
 - ※ 단독가구 또는 부부1인 가구, 주소지가 동일한 부부2인 가구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전송
 - ※ 주소지가 다른 부부2인 가구는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 주소지 중 선택하여 전송
- 신청접수 이외에는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등록 불가
 - 신청접수 이외 변경신고, 이의신청,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는 「NPIS」에 입력 후 원본서류는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송부(등기우편)
- 신청등록 후 진행상태(접수대기, 접수, 심사 중 등) 및 신청결과(적합여부 등) 확인

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확인 후 서류보완
 - 기초연금 신규신청으로 전송되었으나 「행복e음」에 통합조사표가 존재하는 경우 변경신청으로 접수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을 등록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행복e음」을 통해 서류보완 요청
 - 신청단계에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스캔본 등 보완요청이 가능하나 접수이후는 보완요청이 불가능
 - ‘신청서 반려’시 신청일이 변경되어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복지로(국민연금공단)」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 경우 보완요청으로 통보
- (타 복지급여 신청 의사가 있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접수처리 전에 수급희망자에게 연락하여 타 복지 급여 신청절차 진행
 - 타 복지 급여 서류 보완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변경신고, 이의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신청 서류를 송부 받은 경우 「행복e음」에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는 직접 「행복e음」에 등록하여 처리



참고 거주불명등록자 접수

- **(신청방법)**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거주불명등록자의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구체적으로 확보
- **(대리인 신청)** 대리인이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 거주불명등록자(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불가
 - 거주불명등록자(본인)에게 기초연금 신청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류에 대한 등 자필 서명) 등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기관을 방문하도록 함
 - 행정상 관리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거주불명등록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라도 직접 방문이 가능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실시 또는 「행복e음」 기초연금 현장조사 관리로 의뢰
-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에서는 실제 거주지의 읍·면·동에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서식 16호)'를 송부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
 - ※ 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에 현장방문 실시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현장확인조사를 의뢰하여 확인
 - ※ 국민연금공단 현장확인조사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거주불명 등록일, 거주불명 등록유형 등에 대해 기재할 하되, 개인정보보호에 철저
 - (실제 거주지 읍·면·동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매월 15일까지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으로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 사실 파악결과 통보서(서식17호)'를 송부

3

조 사

- I. 수급자 선정 개요
- II. 조사의 개요
- III. 조사가구 유형 확정
- IV. 소득조사
- V. 재산조사
- VI. 수급가구 유형 확정

CHAPTER

I

수급자 선정 개요

1 업무흐름도

조사가구 유형 확정

-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 및 상담을 통해 배우자 유무를 확인
- 동일 주민등록상 또는 별도의 주민등록상 배우자(사실혼 포함) 추가
- 소득·재산 조사 또는 보장결정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라도 사후 관리를 위해 가구구성(제외)사유를 입력하여 등록

공적자료요청

-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 공적자료요청 시 직역연금정보도 자동으로 요청됨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확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각각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 예외대상, 특례대상으로 구분
- 「행복e음」 통합상담이력과 직역연금 요청현황 회신결과가 상이한 경우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수급희망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로 확인 시에는 소득·재산조사 중단 후 책정제외 처리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의 예외자 및 특례자 제외)

소득·재산조사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
- 공적자료와 다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해 반영여부 결정

소득인정액 요건 확인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여 수급대상 가구 결정

수급가구 유형 확정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 부부2인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제외대상인 경우 책정제외(통지)

3

조
사

2 선정기준

가.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확인

- 「행복e음」 공적자료요청에서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되어 요청되므로 회신완료를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각각 기초연금 지급 제외대상, 예외대상, 특례대상으로 구분하여 기초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
- 상담을 통한 「행복e음」 통합상담이력과 직역연금 요청현황 회신결과가 상이한 경우 해당 직역연금 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1) (원칙)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유족연금

2)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 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3)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을 지급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준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 ②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 ③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
 - ※ 선정기준액 요건 및 「장애인연금법」상 특례요건을 만65세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대상
 -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 ③ 65세에 도달할 당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 ④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4)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의 수급자로 한정되며 개인 단위로 관리
 - 본인은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이더라도 배우자는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아닐 수 있음

 예시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 A는 만 65세 이상,
그 배우자 B는 만 65세 미만인 경우

- A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B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A에게만 특례를 적용하여 기초연금을 지급
- 65세 미만인 B가 추후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국한되므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인 B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후 선정기준액 이하로 들어오더라도 특례를 적용받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 등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기초연금 특례수급 대상이 됨

예시 2014년 7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직역연금 수급자 A와 그 배우자 B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중에 2021년 1월에 배우자 B에게 새로운 직역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특례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수급자 A와 그 배우자 B에게 기준연금액의 50%씩 산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 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애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애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애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주1)}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애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애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애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주1)}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애일시금			
	장애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 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군인연금	퇴역연금	제외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역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 ^{주1)}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주1)}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주1)}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주1)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참고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종류

종 류		지급 요건
퇴직급여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퇴직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 대신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10년 이상 재직자가 10년을 초과한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퇴직유족 급여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퇴직연금 수령 중 사망 시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 수령 공무원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망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시
	퇴직유족일시금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한 때
비공무상 장해급여	비공무상 장해연금	재직 중 공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1~7급)로 퇴직 시 * 본인 최종기준소득월액의 26%~19.5%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재직 중 공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해(8급 이하)로 퇴직 시
퇴직수당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한 때
직역연계 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6년 1월 1일 시행) : (연금수급요건 조정) 퇴직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

* 음영의 표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참고 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종류

종 류			지급 요건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로 퇴직한 경우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상태로 된 경우 * 장애등급(1-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일시금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선택 * 5년분의 장해연금액 일시 지급
재해 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해연금액의 60%
	순직유족 급여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주1)})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주1)})	
	위험직무 순직유족 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
		위험직무 순직유족보상금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한 경우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재활운동을 한 경우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 공무상 재해로 심리상담을 한 경우(사전승인 필요)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재난으로 주택이 소실·유실·파괴된 경우
	사망조위금		공무원 본인 사망한 경우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사망한 경우

주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해보상급여이며, 그 외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준용

* 음영의 표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

나. 소득인정액 요건 확인

1) 소득인정액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 선정기준액

구 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2,704,000원

- (의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산정방식) 만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적용기간)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는 '0'으로 처리하여 계산

-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98\text{만원})\}^* + \text{기타 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 \times \text{재산의 소득 환산율} \div 12\text{월}] + P^{**}$$

*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대도시(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8천5백만원), 농어촌(7천2백5십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CHAPTER

II

조사의 개요 [법 제11조]

1 조사의 원칙

가.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에게 확인(입증자료 징구 등) 후 반영
- 제출된 입증(증빙)자료는 진위를 판단하여 「행복e음」 구비서류에 등록하고 통합상담관리에 기록·관리

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직접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장확인조사 의뢰

- 관계 공무원이 직접조사
 - 직접조사 시 관계 공무원은 공무원증 지참 및 현장 조사서(서식21호) 제시
 -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애로사항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파악·조치
- 국민연금공단에 현장확인조사 의뢰
 - 현장확인조사 의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확인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현장확인조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확인요청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하되,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
 - **화면경로** 「행복e음」 > 조사·결정 > 조사 > 기초연금 현장조사 관리 > 신규요청
 - 국민연금공단은 현장확인이 요청된 날로부터 7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14일까지 연장) 처리

-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조사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조사·재조사 요청 가능

화면경로 「행복e음」 > 조사·결정 > 조사 > 기초연금 현장조사 관리 > 추가요청 또는 재요청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 [법 제2조제4호]

가. 조사의 단위 : 가구단위로 조사

나. 조사의 대상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지역연금 수급권 등

-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포함
- 가출·행방불명·실종¹²⁾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조사
 - ※ 다만, 부재 배우자의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3호)'를 징구할 수 없으므로,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 명의 외의 소득·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포함 가능

다. 외국인인 배우자 또는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배우자에 대한 조사

-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준하는 공적자료·금융자료 등의 조회가 가능한 고유식별번호¹³⁾가 있는 경우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경우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적용



주의 외국인 배우자,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 배우자는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다만, 혼인 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

12)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자,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13)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말소전 주민등록번호(읍·면·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갈음(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등

3 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 (목적) 신청 시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해 실시
-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
- (시기)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 개시
- (조사내용)
 - 수급희망자(본인)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국민연금 A급여액 등 기초연금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국민연금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음
- (방법)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 신청 후 조사기간 중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결정 전에 반영
- (결과)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나. 확인조사

- (목적)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대상) 변경신고 또는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자(본인)와 그 배우자
- (시기) 정기조사, 수시조사,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 ① 정기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 금융정보 등 갱신·반영
 - ② 수시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군·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

③ 변동신고에 의한 조사

- 수급자가 소득·재산, 기초연금액, 인적 요건 변동 사항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세부내용
소득 인정액	소득	소득액 증감	• 근로소득 : 월 급여액 변동, 취업·퇴사·이직 등 • 사업소득 : 사업소득액의 변동, 사업자 등록, 휴·폐업 등 • 재산소득 : 연금·이자소득의 발생 및 변동 등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등의 급여액 변동
	재산	재산액 증감	• 재산 증감(매입·매도, 증여 등), 재산가액 변동
수급자격 및 가구유형	인적 변동	가구 유형 변동 수급 정지 여부 수급권 상실 여부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실종, 가출, 해외장기체류 등 •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등
기초 연금액	기초연금액 변동	국민연금·직역연금 수급권·급여액 변동	• 국민연금 수급권의 발생·변동·소멸,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변동 등 • 직역연금 급여액 변동
급여 관리	관리행정동	주소지 변경	• 전출·입
	급여 지급	계좌	• 계좌 변경

- (방법) 「행복e음」을 통한 자료 확인 및 소명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징구
- (결과)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여 수급자에게 통지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 수립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
 - ① 조사·질문의 기본방향
 - ②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 ③ 조사·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방안
 - ④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확인조사 실시
 - (시·군·구 사업팀) 조사범위 할당 등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 결과 취합·정리 및 보고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조사계획에 따른 실질적인 확인조사 실시, 조사결과 사업팀에 통보
 - (읍·면·동)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업무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
 - ※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가 요청한 현장확인조사 업무수행

다. 중점관리수급자 확인조사

- (목적)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
- (대상) 「행복e음」으로 조회(통보)되지 않아 정기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급자
- (조사내용)

1) 사실혼·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 (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

- 유선 및 출장확인을 통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 여부 확인

① 주관적 요건

- (원칙) 양 당사자가 사실혼·사실이혼 의사에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인정
- (예외) 사실이혼의 경우 수급자가 사실이혼 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의 거주지·연락처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확인자'에 대한 확인으로 사실이혼 같음
 - ※ 확인자 :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이웃주민 중 우선순위에 따른 2인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인도 가능
 - ※ 수급자 또는 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상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 징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는 확인자로부터 확인

② 객관적 요건

- (사실혼)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인정.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 없이 인정
- (사실이혼)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거나 실제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불인정
※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 요건 확인

2)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자

- 유선 및 대면접촉 등을 통해 지급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 파악
※ 유선 및 출장방문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되, 분기별 1회 이상은 반드시 지급자와 대면 접촉하여 확인

3) 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

- ※ 다만, 부부2인 지급가구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는 제외
- 지급자의 대리수령 '사유 요건'과 '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인정

① 사유 요건

- (원칙) 성년·한정·특정 후견 개시, 치매 등 대리수령 사유의 지속여부는 반드시 입증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경우 인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진단서 등의 별도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
- (예외) 대리수령 사유가 채무불이행인 경우는 대리수령하고 있음을 지급자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 입증자료 징구없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

② 인지 요건

- (인지 가능) 타인계좌로 수령하고 있음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인지 불가능) 타인계좌 예금주가 지급자를 위해 생계지원한 경우 인정¹⁴⁾

14) 인지가 불가능한 지급자의 생계지원 인정기준 : 동거 또는 생계지원을 위한 비용지출 사실 확인
 - 동거 시에는 실제 거주지로 출장 방문하여 타인계좌예금주와 지급자의 동거여부 확인(주민등록자료 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동거 인정)
 - 비동거 시에는 타인계좌 예금주가 지급자를 위해 지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병원비 영수증 또는 계좌입금내역서 등)를 징구하거나 현금 지급 등으로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출장을 통해 지급자를 실제 보호(개호)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

4)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부1인 수급가구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재 배우자로 인정된 자는 2017년 기준을 적용하여 출소일까지 확인대상으로 관리하나, 2018년 이후 확인된 교도소 수감자는 부재 배우자에서 제외

· ‘공적자료 확인’으로 부재사유 파악 후 ‘현장확인’을 통해 부재사실 확인

① 공적자료 확인

- 주민전산자료 조회 또는 경찰서 등 관련기관으로부터의 공문확인 및 수급자를 통하여 부재사유 지속여부 등 사실 확인
- 부재배우자가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접수하여 사망으로 결과 등록

② 현장확인

-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로 출장하여 가족 및 이웃주민으로부터 부재 배우자의 귀환·동거여부 등에 대하여 추가 확인

5)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국적을 가진 수급자로서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 여부 및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신청 및 결정 여부 확인

① 관할 읍·면·동(또는 시·군·구)를 통해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 2년 경과 여부를 확인

②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신청 및 결정여부를 확인

※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본인)으로부터 확인 및 관련 서류 징구

③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대상자(본인)에게 확인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철회한 경우)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됨을 안내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신청한 경우) 귀화허가 결정 및 1년 경과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 등 안내하고,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결정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신고절차 안내

- 6)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 (방법) 현장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 확인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
 - ※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중점관리 수급자 조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협조체계 유지
 - (결과)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

라.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조사

- (목적) 기초연금 수급(권)이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한 정기적 이력관리를 하여 수급가능 예측된 자에 대해 기초연금 신청안내
- (대상) 2016년 1월 1일 이후 기초연금 신청자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자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중 안내 거부 의사를 밝힌 자는 안내대상에서 제외
- (시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조사내용) 소득, 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등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로 수급가능 예측
 - ※ 다만, 「행복e음」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존자료로 유지(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 (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선정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 수급권 취득이 가능한 자를 추출
 - (시·군·구) 추출된 대상자의 소득·재산을 검토하여 신청안내 대상자 최종 확정
 - (국민연금공단)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 안내
 - ※ 신청안내문 우편발송, 모바일(LMS 등) 안내, 1:1 상담 등 개별 유선안내, 미상담(신청)자 모바일 재안내

● (결과)

-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합으로 예측되는 수급희망자에게 신청안내
- 책정제외 당시의 소득인정액 아닌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최근 조사된 소득을 확인하여 상담

화면경로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수급희망관리 > 수급희망 결정대상자

4 자료의 제출 요구 [법 제11조]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 「행복e음」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급여실시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참고 조사 및 자료 징구의 근거

-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11조제1항]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 [법 제11조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법 제31조제1항]

CHAPTER

Ⅲ

조사가구 유형 확정

1 조사가구 구성확인

-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배우자의 유무 확인
 -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연령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포함
 -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조사가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조사가구 유형에 따라 수급(희망)자 및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공적자료 요청

2 조사가구 유형

가. 단독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가구

나. 부부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연령무관)가 있는 경우

- ※ 부부와 노부(모) 세 명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행복e음」 ‘통합조사 및 결정표’는 노부(모)의 ‘단독가구 통합조사 및 결정표’와 부부의 ‘부부가구 통합조사 및 결정표’를 분리하여 가구를 구성

3 가구구성과 조사방안

가.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단독가구로 적용되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소득·재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사실상 이혼 관계에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이혼 상태에 동의하여야 하며,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등)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징구
 - ※ 타 복지급여에서 사실조사보고서 존재 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 19호)’에 같음



사실혼¹⁵⁾·사실이혼¹⁶⁾ 업무처리 절차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사실상(이)혼 상태에 동의하여야 하며, 자녀(필요시 이·통·반장 등)로부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 징구
- 사실(이)혼 관계를 주장하나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배우자 동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① (읍·면·동) 서류제출 미비 시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 않도록 유의
 - ②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서류보완 요구 : 수급(권)자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 제출한 경우 조사 진행
 -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의뢰
 - ※ 조사 의뢰 전에 수급(권)자 상담 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확인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확인요청 내용 등에 대해 기재
 -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배우자 동의 여부 및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19호)'에 갈음하여 처리
 - 현장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구하고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각하 처리
 - ③ (국민연금공단)
 -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의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회신
 - ※ 단, 조사의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14일 이내 회신 가능
 - ④ (시·군·구 사업과) 각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결정

- 15)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관계로 법률상 이혼관계이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당사자들의 사실혼에 대한 신고(동의) 없이 추정만으로 사실혼 부부로 처리 불가능
- 16)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혼인생활(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관계로 세대분리되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함께 생활 또는 거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이혼 불인정

나. 부부가구로 적용하지만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3호)’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
- ※ 지침 변경 전(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재배우자로 인정된 교도소 수감자에 대하여는 출소일까지 기존 지침대로 부재배우자로 인정



주의 배우자 부재 시 사후관리 방법

-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은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로 관리
 - 가출, 행방불명, 실종 등은 연 1회 이상 증빙서류(실종·부재 신고 신고증, 경찰서 가출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등) 제출토록 안내

CHAPTER

IV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임대, 기타사업)소득, 재산(이자,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2 소득산정 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전월 소득’을 반영

나. 변동자 처리기준

- 상시근로소득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반영)을 산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확인서(노동부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반영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휴·폐업시 사업소득 반영 제외
 - ※ 휴업의 경우 휴업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사업소득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2)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반영



근로소득에 대한 공적자료 반영 순서

- (1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2순위)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 월평균보수)
- (3순위) 국민연금공단(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4순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5순위) 국세청(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자(수급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실제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해당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보수가 결정되므로 소명절차를 통해 실제소득을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회사부도로 실직상태이나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퇴직증명서 발급 등이 어려운 경우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kftc.or.kr>) 당좌거래정지정보 조회 확인 후 반영

3) 근로소득 산정 방식

- 적용범위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된 상시근로소득
- 산정방식 : 상시근로소득 있는 자 중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본공제(98만원) 후 나머지 금액에 적용률(0.7)을 곱하여 산정
※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적용

$$\text{근로소득} = (\text{상시근로소득 금액} - 98\text{만원}^*) \times \text{적용률}(0.7)$$

* 2021년 최저임금(8,720원) × 20일 × 5.6시간

예시 근로소득 공제방법

- 단독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364,000원
(산식) [근로소득(15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 364,000원
- 부부가구의 상시근로소득이 각각 200만원, 1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산정금액은 1,288,000원
(산식) [근로소득(20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 [근로소득(180만원) - 기본공제(98만원)] × 0.7



참고 일용근로자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조회 결과를 확인가능하며, 근로소득에서 자동 제외됨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공공일자리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공공일자리소득과 자활근로소득이 「행복e음」의 공적자료로 통보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소득 산정 제외됨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또는 근로복지공단(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또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소득은 「행복e음」에서 상시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 (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를 통해 사업 성격을 확인하여 처리)

나. 사업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행복e음」 참고자료조회 결과를 통해 건물, 상가, 본인 거주 외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토록 하여 임대소득을 파악
 -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상 임대수입의 합계액에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정
 - ※ 국세청 의무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2018년 이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또는 연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
(2019년 이후)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신규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 임대소득이 회신되기 전까지 계약서 상 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공제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을 산정
- * 2019년 국세청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은 42.6% (매년 3월 말 고시)

2) 기타사업소득

가)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반영
- 다만,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소득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우선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 반영순서와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직권으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소명절차(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등)를 통해 실제소득으로 반영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 업종코드 : 94****)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인적용역제공 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1 참조)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외판원(940908)의 경우
 $\{40,000\text{천원} - (40,000\text{천원} \times 75.0\%)\} + \{5,000\text{천원} - (5,000\text{천원} \times 65.0\%)\} = 11,750\text{천원}$

※ 업종별 단순경비율 경로 : 국세청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책자 > 기타참고책자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참고 결손 발생시 사업소득 반영기준

-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계산시, 발생한 손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예시 사업장1 : 80백만원, 사업장2 : -20백만원 → 사업소득 : 60백만원 반영

* 다만, 사업소득의 총 합이 “-”가 되는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



참고 인적용역제공사업자 단순경비율(기본율, 초과율) 표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기준)

귀속	업종코드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2019	940100	작가	•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58.7	42.2
2019	940200	화가 및 관련예술가	•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72.3	61.2
2019	940301	작곡가	•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 각색영화편집	58.5	41.9
2019	940302	배우, 탤런트 등	•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34.0	7.6
2019	940303	모델	•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50.8	31.1
2019	940304	가수	• 가수	37.3	12.2
2019	940305	성악가 등	•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53.1	34.3
2019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 창작,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제작 등 수입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921505적용	64.1	49.7
2019	940500	연예보조서비스	•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70.9	59.3
2019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고문료, 교정, 교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58.4	41.8
2019	940901	바둑기사	• 바둑기사	66.0	52.4
2019	940902	꽃꽂이교사	•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79.8	71.7
2019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학원강사	61.7	46.4
2019	940904	직업운동가	•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 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58.6	42.0

귀속	업종코드	업종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	초과율
2019	940905	유흥접객원 및 댄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61.7	46.4
2019	940906	보험설계사	•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77.6	68.6
2019	940907	음료품배달원	•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 음료품 소매판매원(→522099)	80.0	72.0
2019	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외판원, 정수기, 자동차방문판매원, 기타외판원	• 서적 외판원 • 학습지방문판매원 - 학습지(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씽크빅, 윤선생 등) 배부 및 진도 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 화장품외판원 • 정수기방문판매원 • 자동차방문판매원 • 기타외판원 * 단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 적용	75.0	65.0
2019	940909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64.1	49.7
2019	940910	단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 단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525200)	67.8	54.9
2019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기타 모집수당 -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신용카드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 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 채권회수수당 -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67.3	54.2
2019	940912	개인간병인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80.2	72.3
2019	940913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업	73.7	63.2
2019	940914	골프장캐디	•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67.3	54.2
2019	940915	목욕관리사	•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69.8	57.7
2019	940916	행사도우미	•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68.1	55.3
2019	940917	심부름용역원	•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69.2	56.9
2019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집이나 서류 등을 지정된 곳에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78.8	70.3
2019	940919	기타물품배달원	•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68.0	55.2

다. 재산소득

1) 이자소득

가) 정의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등 결과 적용



참고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반영)

2) 연금소득

가) 정의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1회, 연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연간 총 수령금액을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주의 연금소득 산정 시 유의사항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라. 공적이전소득

1)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으로 받는 금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2)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금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로 인한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¹⁷⁾
 - ※ 다만, 상기 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¹⁸⁾, 간호수당¹⁹⁾, 무공영예수당²⁰⁾
 - 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주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훈급여금 대상자는 직역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보훈급여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3) 조사방법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17)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국가유공자 고령수당 포함

18)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9)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20)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소득에서 제외

마. 무료임차소득

1) 정의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대상 및 범위

가) 적용대상

-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가구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무료임차소득 대상에서 제외

참고 무료임차소득 산정 시 주의사항

- 2011년 6월 30일 이전 자녀에게 증여하여 3년이 경과된 경우는 무료임차소득으로 산정
-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되, 무료임차소득은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다만,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 등을 차감하여 소진된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 산정)

나) 적용기준

- 거주기준 :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 * 신청자(수급자)의 65세 미만 배우자만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포함
- 소유기준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제3자와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하되, 무료임차소득 결정 시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다) 산정방법

-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
 - * 공동지분(소유)인 경우에는 지분율만큼만 반영
 - ※ 다만,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하지 않음에 유의

$$\text{무료임차소득} = \text{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times \text{지분율} \times 0.0078 \div 12\text{월}$$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3) 조사방법

-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 주소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가능을 알리는 ‘알람 또는 유사주소 검색’ 확인
 - ※ 알람으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무료임차소득 부과대상 주택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행복e음」의 ‘유사주소 검색’ 기능 활용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및 임차계약 여부 확인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또는 전·월세 임차계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무료임차)인 경우,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주 확인
-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해당 주택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인지 여부를 확인
- 해당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무료임차소득 산정
 - ※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확인

예시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주택에 무료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39만원 산정
 - (산식) 6억원 × 연 0.78% ÷ 12개월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제3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무료임차소득 월 195천원 산정
 - (산식) 6억원 × 연 0.78% × 자녀의 지분율(1/2) ÷ 12개월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와 신청자(수급자)가 1/2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3억원 재산산정
 - (방법)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2)만큼 재산으로 산정
-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신청자(수급자), 제3자가 1/3씩 공동소유 주택에 거주
 - 2억원 재산산정
 - (방법) 신청자(수급자)의 해당 지분(1/3)만큼 재산으로 산정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 「아동복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피부양보조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소득으로 산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2020.4.30.)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직접지불금(2020.5.1.∼)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 생활안정 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 성격
- 「문화재보호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 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금
-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 통장·이장 등 직책수당, 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지원금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환지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수당

CHAPTER

V

재산조사

1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 산정방법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div 12\text{개월} + P^*$$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

나.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한 후 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다.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구 분	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1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신청자(수급자)가 보유한 일반재산의 합산 금액에서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차감

※ 물건의 소유자 및 물건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적용

※ 부부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상위도시를 기준으로 적용

예시 A는 대전광역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고, 그 배우자 B는 강원도 화천군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소유·거주하는 경우(단, 다른 소득·재산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83,333원 $\{(22,000\text{만원} - 13,500\text{만원}) \times 4\% \div 12\text{개월}\}$

2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단,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항공기, 선박(「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²¹⁾(「소득세법」 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임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나.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 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21)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3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항목	산정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입목재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 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4 일반재산 조사

가. 토지, 건축물 및 주택

1) 정의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2) 조사방법

-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건축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3) 유의사항

- 토지·건축물·주택이 종중·문중재산 등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 종중·문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
 - 해당 시·군·구에서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아 등기소에 등기한 경우 재산산정 제외(「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종중·문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²²⁾로 변경 등기 완료시 재산산정에서 제외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산정 방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하여 가액 산정
 - 무허가 건축물은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신고(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
-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산정 방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22)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공동소유를 말함(등기 필요)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종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산정
 - ※ 미등기 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단, 추후 본인 상속지분 등기 확인될 시 재산산정 제외 시점으로 소급하여 재산산정에 포함하여 재계산 처리)
- 예시** 상속재산이 1억원,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재산 1억원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나. 항공기·선박

1)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2)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²³⁾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23) 보정계수 : 「지방세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3%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다. 임차보증금

1)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2)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행복e음」을 통해 전·월세거래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현재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24)}(0.95)$$

24) 적용률 설정 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적용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3) 유의사항

-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에 따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 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 전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 후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 타인으로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
- 신청자(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이주비지원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
 - 금융기관 이외의 이주비지원 대출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전세계약서 제출 시 처리방법
 - 감소분에 대하여 매대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유료 및 실비시설임소자 입소보증금 처리방안
 - 입소보증금은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명의자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소 시 반환되는 금액만큼을 임차보증금으로 재산 산정

주의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등) 임대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산정방법

(임대보증금) 시가표준액의 50% 한도 내에서 확정일자지 계약금액까지 부채로 인정

예시 A가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를 주었을 경우
 ⇨ A의 임대보증금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유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받는 월 임대료는 임대인(A)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임차보증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공공기관과 입주자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징구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1,000만원)한 B가 입주한 경우
 ⇨ B의 임차보증금은 950만원으로 산정(1,000만원×0.95)

라. 조합원입주권

1)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²⁵⁾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참고자료 확인시 관리처분계획 등 제출받아 보유여부 확인
- 기존 건물(토지)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확인. 기존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동시 조회시 이중반영하지 않고 기존 건물(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 반영에서 제외처리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 평가액에서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확인서 등
 - ※ 이주비는 부채로써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한 경우 금융부채 회신여부 확인하여 회신되지 않은 경우 부채증명서 제출받아 부채로 반영하며,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지급한 경우 관련 이주비 지급내역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채로 반영
- 조합원입주권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관련 자료, 매매계약서 등 확인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후 기타(증여) 재산으로 반영하여 확인
- 재개발 완료되어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조합원입주권내역과 등기부등본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자료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을 재산으로 확인 반영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주택(아파트)입주권으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기존 주택(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예정인 주택(아파트)에 대한 권리



주의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청약 당첨 물건지와 등기부등본 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자료는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 재산 확인·반영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마. 분양권

1)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을 반영
-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전매행위는 불법행위로 해당 분양권 거래내역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까지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분양권 가액으로 확인하여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바. 입목재산

1)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지방세법」 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2)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사. 어업권, 양식업권

1)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2) 조사방법

- 「행복e음」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과 양식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아. 회원권

1)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2)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 콘도미니엄 등기회원일 경우 해당 콘도미니엄의 건축물에 대한 소유지분이 확인되므로 일반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P값 산정

3) 조회 결과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산정
※ (예외) 소유하고 있는 모든 회원권이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회원권의 영업장이 폐업중인 경우 →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적용

 예시 회원권 재산 산정방법

- 대도시 거주하는 단독가구로 주택 2억원, 골프회원권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 20,216,666원
(소득인정액 산식) = {(주택 2억원 -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연 4% ÷ 12개월} + 회원권 2천만원 = 216,666원 + 2천만원 = 20,216,666원

자.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우선순위
 -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 (2순위)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3순위) ‘국토부 최초 취득가액 × 잔가율’과 ‘취득가액 × 잔가율’ 중 큰 금액
 -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 잔가율 : 차량 기준으로 정한 잔존가치 비율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비율
 - ※ 차량 가액이 파악되지 않는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를 통해 리스 자동차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로 하여 성실신고 유도

화면경로 「행복e음」 > 조사·결정 > 통합조사 및 결정 > 소득재산상세조회 > 참고자료 > 자동차의무보험 목록 또는 「행복e음」 > 변동·사후 >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본정비 > 자동차의무보험

 - 리스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 리스 자동차에 기인한 금융기관 부채는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3) 조회결과 적용

-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상담시 자동차 유형 및 소유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다만, 부부 공동명의 자동차가 1대인 경우 지분여부에 상관없이 가구당 1대로 재산 산정

-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주의 사망한 배우자의 고급자동차, 회원권, 콘도는 일반재산으로 미등기상속재산 처리지침에 따라 재산반영 이후 상속등기 여부에 따라 P값 반영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이 적용되는 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 ※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및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제외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자동차(고급자동차)
 - (대상)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 (적용방법) 기본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 및 자동차 가액을 전액 산정.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개별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함
 - ※ 개별차량 가액을 합산하여 4천만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고급자동차 판단 시 차량가액(4천만원 이상)으로만 판단

주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적용

- ① 차령²⁶⁾이 10년 이상인 차량
-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 받아 실제 차량을 공매차량 보관소에 인도 후 '차량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68조 공매통지에 의거 실제 "공매통지공문"을 송달 받은 경우 등
 - 다만, 교통법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되었으나 실제 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 다만, 생업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적용
 - * 생업용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며, 해당 차량이 없으면 해당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필요 시 증빙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 자동차매매사업자로 판매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④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도 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⑤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 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야 함
 - ㉠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 교통법칙금 50회 이상 미납 ㉣ 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 ※ 다만,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산정 제외
- 명의도용·명의대여, 대포차량인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 (확인사항)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 납부, 유류비 지출여부 등) 등

26) 차령 산정은 년(年)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 예를 들어 최초등록일(연식보다 빠른 경우)이 1999년 5월 1일인 경우 2009년 1월이 되면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분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전상군경(제4호), 공상군경(제6호), 4.19혁명부상자(제12호), 공상공무원(제15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제17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세금 등 감경 차량은 제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적용방법)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을 제외할 수 있음
 - ※ 이 경우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으로 산정



예시 자동차 재산산정방법

-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노인과 아들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서 비과세 차량
 -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차량
- 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 자식과 공동 소유하는 일반차량 : 전액재산으로 산정
 - 소유차량 2대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 ※ 장애인 차량만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1대에 한해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5 금융재산 조사

가. 금융재산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나. 금융재산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

다. 금융정보등 조회

1) 조사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시행령 제14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 다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저축액은 적립기간 중에는 금융재산에 미반영, 만기 후 수령하는 적립금(저축액+정부지원금)만 금융재산에 반영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를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
 - 명의신탁이나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상·증세법을 준용한 평가서를 통해 소명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논의·결정
 - ※ 금융기관 및 주식발행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주식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은 소명자료로 인정 불가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3)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4)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행복e음」에 스캔등록 → 시·군·구에서 「행복e음」 금융재산조회 요청 (매주 화요일) → 보건복지부에서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의뢰 (매주 목요일) → 「행복e음」을 통해 금융재산조회 결과 회신
※ 금융재산조회 요청에서 금융조회 결과 회신까지 3~4주 소요

5)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매주 1회 조회 의뢰
※ 화요일까지 요청분을 목요일에 일괄 조회 의뢰
- 확인조사 :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조회 의뢰

6)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기초연금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됨 [법 제12조제6항]
-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29조제1항]

라. 금융정보등 조회결과 적용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2)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 중증·문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²⁷⁾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 경찰관서의 수사결과가 금융사기로 확정되어 금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 ※ 다만, 수사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 재산으로 산정
-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로 확인

27)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마. 기타일시금 처리 방안

1)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퇴직)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2)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처리

* 기타(증여)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용 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등

바. 금융재산의 공제 기준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사. 유의사항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²⁸⁾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28) 요구불예금은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복 산정 문제 발생 가능

- 보험계약자 명의가 본인이나 배우자 외 제3자로 변경 시 기타(증여)재산 항목으로 산정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개시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개시 후 금융재산과 연금소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6 기타(증여)재산 조사

가. 정의 :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

나. 적용기준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²⁹⁾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³⁰⁾에서 타재산증가분³¹⁾, 본인소비분³²⁾,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 (또는 처분일)³³⁾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기타(증여)재산 =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 - (타 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기타(증여)재산은 증여(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행복e음」에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란,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

※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증여 또는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었으므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29) 토지·건축물·주택, 항공기·선박,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30)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31)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부채를 상환한 경우

32)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33) 등기접수일(「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

※ 부동산 매매계약 후 등기접수가 늦어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처분일로 산정 가능

다. 가액 평가 기준

- 기타(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 : 증여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 ※ 단,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소명하는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반영(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신고필증 징구)
- 재산산정 제외 자동차(국가유공자, 장애인, 조례에 의해 비과세차량 등)를 증여(또는 처분)한 경우 :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주의 기타(증여)재산의 예외

• 종중·문중의 금융재산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계좌이체한 경우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 고유번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또는 과세자료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

[예외] 고유번호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종중·문중재산 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하여 금융재산을 이체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

① 고유번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 세무서에서 발급된 ‘고유번호증 발급 불가’ 확인서류 예시 : 사업자등록거부통지서 등 고유번호 불가 사유가 명시된 확인서 등

② 종중·문중 재산관리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인계한 경우 지위인계 사실, 재산의 내역·운용 현황 등을 확인

※ 확인서류 : 종중·문중 회원명부·정관, 총회 결의서 또는 대표자의 기명이 날인된 총회 회의록, 종중·문중 대표자 확인서, 종중·문중재산 결산내역(규모·내역·운영현황 등을 파악) 등

③ ‘계좌거래내역서’를 확인하여 인계한 금액만큼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

• 주택(건물) 신축판매업자의 처분 재산

[원칙]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산정

[예외] 주택(건물)신축판매업자에 따른 사업자등록 후 주택(건물)을 신축하여 보존 등기 후 처분한 경우

- 회신된 주택 시가표준액을 삭제하고 주택(건물)신축판매업 폐업시 국세청 신고된 소득정산자료 상 과세표준액을 금융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확인 반영

라. 기타(증여)재산의 범위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함

마. 조사방법

1)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 부채는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주의 타재산증가분(부채상환)에 대한 예외

[원칙]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예외] 불가피하게 타인의 부채 상환을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타재산증가분으로 차감가능

- ① 본인이 주채무자는 아니나, 연대보증 등으로 인한 채권추심에 의하여 해당 부채를 상환한 경우
 - ※ 확인서류 : 채권추심명령서, 부채상환 증명서, 대위변제 확인서(채권에 대한 권리가 채무자에서 변제자에게 이전됨을 증명하는 증서) 등
- ② 사망한 배우자 명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 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 등을 통해 부채까지 상속승계 받은 경우
 - * 한정상속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함
 - 「행복e음」상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된 재산 및 부채가 배우자의 사망과 함께 부채는 삭제되고 재산만 수급자에게 산입된 경우 포함
 - 수급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상속등기 완료된 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사망한 배우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면 부채도 상속받았다고 간주하여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 ※ 확인서류 : 상속으로 인한 부채 승계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기부등본, 부채완납확인서 등

[원칙]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

[예외]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가능

2) 본인소비분 확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장례비,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 단,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준비속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질환*으로 치료·요양·재활 등의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자
 - 적용기준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에 준하여 적용
 - 적용기간 : 암·희귀난치성 질환(등록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환자(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연장가능)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진단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확인 요청서 및 확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단, 동거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 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 및 양육비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액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 이혼합의서(공증), 법원판결문, 계좌이체 내역서 등
-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금융)에 포함하여 신청자(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이의신청위원회에서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주의 임대보증금 기타(증여)재산 산정 방법

- 임대했던 주택 등을 처분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시가표준액 50%범위 내)을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처리
- * 처분한 주택, 상가 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에 기타(증여) 재산에서 차감

3)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반영한 금액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 * 자연적 소비금액³⁴⁾(월 인정액)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단독가구 : 3인 가구, 부부가구 : 4인 가구)
- * 가구단위로 인정하고 있어 일반재산 처분(주택매각 등), 금융재산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중복 차감되지 않도록 주의
- 금융재산의 경우 최근 조사일자의 '조회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되, 소명하는 경우 '계좌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이 속한 달부터 차감

34) 자연적 소비금액

구분(원/월)	3인 가구	4인 가구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3,983,950원	4,876,290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	1,991,975원	2,438,145원

- 자연감소분 산정 시 일반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 부부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단독기준으로 적용

※ 연도별 적용 자연적 소비금액

구 분	3인 가구(단독가구)	4인 가구(부부가구)
2014년	1,594,941원	1,956,984원
2015년	1,631,625원	2,001,994원
2016년	1,789,509원	2,195,717원
2017년	1,820,457원	2,233,690원
2018년	1,841,575원	2,259,601원
2019년	1,880,016원	2,306,768원
2020년	1,935,288원	2,374,587원
2021년	1,991,975원	2,438,145원

예시 자연적 소비금액 산정방법

- 단독가구 A가 2015년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2021년 3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2개월(2015년 11월~12월) × 2015년도 최저생계비의 120%(1,631,625원)
 - 12개월(2016년 1월~12월) ×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789,509원)
 - 12개월(2017년 1월~12월) ×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20,457원)
 - 12개월(2018년 1월~12월)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41,575원)
 - 12개월(2019년 1월~12월) ×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880,016원)
 - 12개월(2020년 1월~12월)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935,288원)
 - 3개월(2021년 1월~3월)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50%(1,991,975원)

7 부채³⁵⁾ 조사[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 금융기관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금융기관 등에는 제1금융권³⁶⁾, 제2금융권³⁷⁾,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가 포함
 - ※ 제도권 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가능

2) 조사방법

-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내역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 주택연금,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 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³⁸⁾
 - 자녀 등 타인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증여재산으로 산정
- 주택연금³⁹⁾ 수령액은 재산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주택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예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째 주택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A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까지 수령한 주택연금액 누계(60만원×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추가산정

35) (부채의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36)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을 지칭

37) 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을 지칭

38)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3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주택연금이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있을 시에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누적연금액을 부채로 산정⁴⁰⁾
-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행복e음」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을 통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대출내역 변동사항을 재확인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
 - ※ 단, 신청자(수급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부채로 인정
- 한도 대출 (마이너스 대출)⁴¹⁾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

1) 부채 인정범위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금액

2) 조사방법

- 조사대상자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액)은 「행복e음」 공적자료를 통해 제공
- 할부금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된 해당 할부회차의 금액만 부채로 반영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연체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현금서비스 연체

40) 단, 주택연금 누적액이 금융회사 부채(예를 들어, 계좌명이 주택연금대출 등으로 표시되는 부채)로 조회되는 경우 연금누적액이 이미 부채로서 반영되었으므로 연금누적액을 부채로 직권 재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41)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나, 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이 가능

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

1) 부채 인정범위

- 공공기관⁴²⁾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⁴³⁾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2) 조사방법

- 해당 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제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을 확인하여 부채로 반영
- 주기적으로 대출내역 변동사항을 재확인하여 부채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농지연금 수령액은 재산(농지)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

예시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0만원씩 1년째 농지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A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까지 수령한 농지연금액 누계(60만원×12개월)를 부채로 산정하고,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추가 산정

라. 개인 간 부채(사채)

1) 부채 인정범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42)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3)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2) 조사방법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인 대출금액을 확인

예시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 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이외의 모든 개인 간 부채

마. 임대보증금

1) 부채 인정범위

- 임대보증금에 대해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주택, 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전세권 설정 등기⁴⁴⁾된 금액,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주택, 상가 등이 공동지분일 경우 소유 지분의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전·월세거래정보를 참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사실 확인하여 반영

-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 준용

※ 선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44)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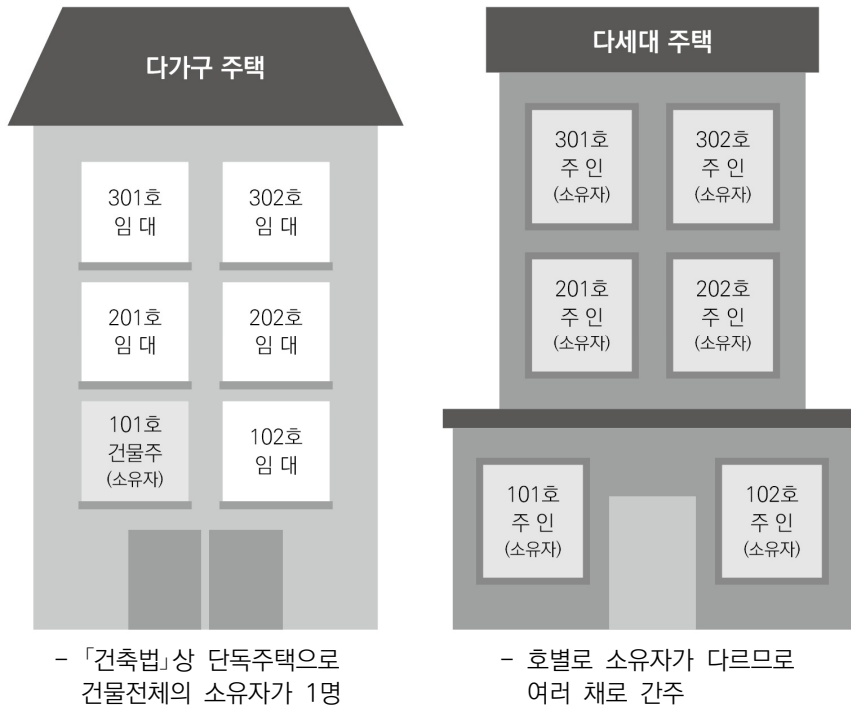
2) 조사방법

-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 ① (상가 임대보증금)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 등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인정
 - ※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부채 인정시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 확인 철저
 - ②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차정보제공요청⁴⁵⁾에 따른 확인서⁴⁶⁾
 -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시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 가능
 - ③ (공공기관과의 임대차계약) 공공기관과 임대인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세임대계약사실확인원'
-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
 - 「행복e음」 등록 시 임대보증금을 시가표준액 50%를 넘지 않도록 하되, 부채로 인정되는 금액만큼 등록
 -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으로 부채로 산정
 - 예시1**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1억원(주택 시가표준액 2억원의 50%)을 부채로 산정
 - 예시2** 시가표준액 2억원인 주택을 7천만원에 전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원을 부채로 산정
- 다가구 주택의 임대보증금 부채 처리방법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까지 부채로 인정

4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별지3호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

46) 확정일자 부여 기관(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에서 발급

참고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3)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자(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바.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 처리방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 상환금으로 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변제를 강제·구속하고자 하는 사문서로 부채가 아니며,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CHAPTER

VI

수급가구 유형 확정

1 단독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부부가구로 조회되지만 사실이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 소득·재산 조사 대상에서 제외

2 부부1인 수급가구

-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나 부부1인 수급가구로 적용하는 경우
 - 직역연금 특례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행방불명, 가출·실종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 금융재산에 한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 관리됨
 - 부부 중 1인이 국외체류 60일 이상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신청자의 배우자가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배우자 및 국적취득 신청 후 불허 결정받은 외국인인 배우자인 경우

3 부부2인 수급가구

- 부부(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며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하인 외국인 배우자 및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한 배우자 포함)

-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역연금 수급권자 가구로서 부부 모두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특례 수급자)

4

기초연금액 결정

I. 개 요

II. 기초연금액의 산정

III. 기초연금액의 감액

I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CHAPTER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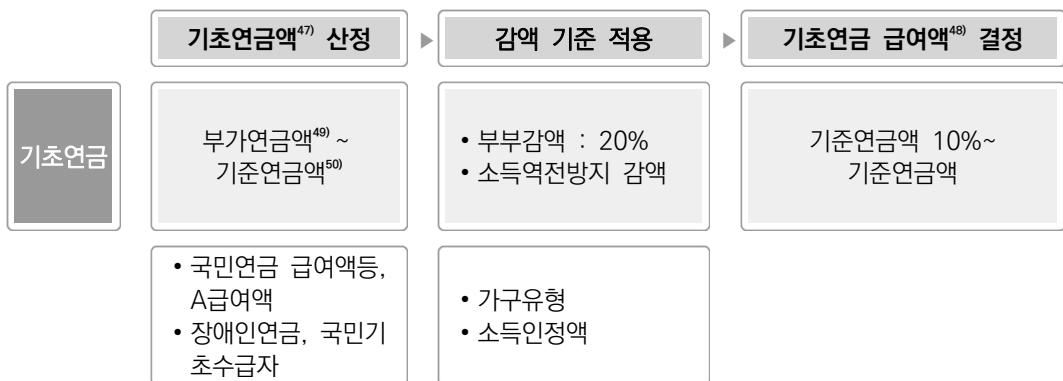
가. 결정단위

업무 단계	대상자 선정	기초연금액 산정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감액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결정 단위	가구	개인	개인	가구+개인	개인

4

기초연금액 결정

나. 결정절차 :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유형별 기초연금액 감액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47) ①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 A급여액, 부가연금액에 의하여 개인별로 산정된 금액

②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보다 크거나 같고 기준연금액보다 작거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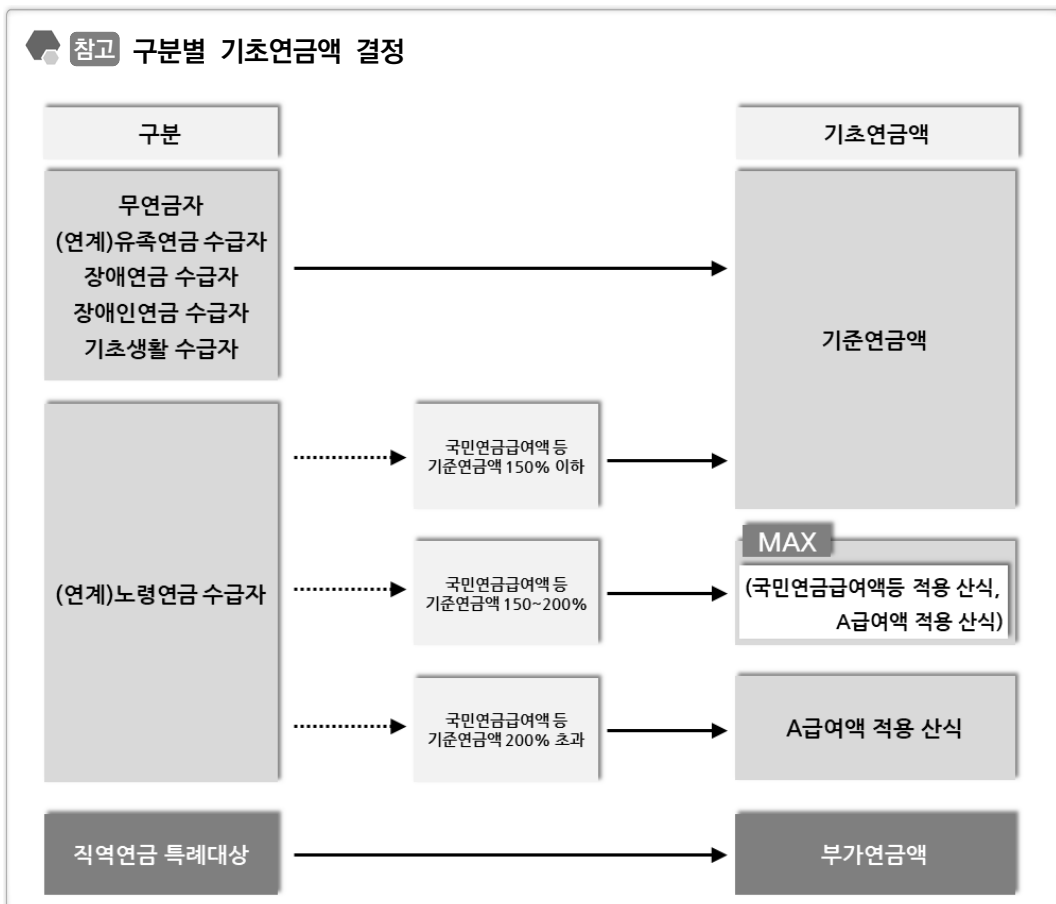
48) ① 개인별로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부부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월 급여액을 의미 ②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연금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동일

49) ①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기준연금액-2/3 × A급여액)에 부가적으로 더해 주는 금액 ②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의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기초연금액 ③ 기준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0) ①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②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반영(차감)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

다. 기초연금액 산정

- 무연금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
- 직역연금 특례대상자는 ‘기준연금액의 1/2(부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산정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라. 기초연금액의 감액

- (부부감액) 부부2인 수급 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가구구성원의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하였을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적용)하여 가구 단위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마. 기초연금 급여액 생성

-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아닌 경우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 부부2인 수급가구 :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자인 경우
 - 단독가구·부부1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부부2인 수급가구

감액대상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감액금액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급여액	Min(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산정 후 부부 각각에게 배분하여 기초연금 급여액을 결정

CHAPTER

II

기초연금액의 산정 [법 제5조]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분할연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이하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 공적연금(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연계연금의 수급권을 포기한 사람

나.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국민연금 급여의 수급권이 있으나,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지급받고 있는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이 없는 사람

- 중복급여 조정⁵¹⁾으로 국민연금·연계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노령연금·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51) 「국민연금법」 제56조 및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하거나 일부 금액을 지급

- 「연금연계법」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제18조제2항제1호나목,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 ※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반영하여 감액
- 「연금연계법」 제18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라 임의계속가입⁵²⁾ 중인 사람
-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른 분할연금수급권자⁵³⁾로서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참고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 기준

- 국민연금 수급자가 실제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국민연금액의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과 소급지급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또한 환수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감액하기 이전 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으나 국민연금을 미신청한 경우 또는 연기연금 신청 중인 자는 실제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없더라도, 수급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민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및 공적연금 연계관련 내용은 부록 참조

52)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음
 53)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가. 개 요

- 국민연금 급여액등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액 결정 산식에 개인별 국민연금 A급여액을 넣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대상
- 국민연금 A급여액이 있는 사람으로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은 제외

나. 적용대상 :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법」 상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연금연계법」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미만)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주의**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자의 경우 A급여액에 상관없이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함

다. 적용산식 :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계산

1)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 개인별 A급여액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A급여액 적용 산식

$$\text{A급여액 적용 산식}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연계연금 미청구 또는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실제 받고 있는 A급여액(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수급권에 의하여 동일 산식을 적용



참고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식

• 국민연금 수급권자

: $(\text{기준연금액}^{54})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부가연금액}^{55})$

• 연계연금 수급권자

: $\{\text{기준연금액} - 2/3 \times (\text{A급여액} + \text{연계퇴직연금액의 } 1/2^{56})\} + \text{부가연금액}$

- 기준연금액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연계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수급권에 해당하는 'A급여액' 및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더한 금액을 차감



예시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가 이혼 시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의 A급여액과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3) 국민연금 급여액등

- 국민연금 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
- 개인별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행복e음」을 통해 조회 가능
- (적용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54) 기준연금액

2021년 1월~2021년 12월 300,000원

55) 부가연금액

2021년 1월~2021년 12월 150,000원

56)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는 연계퇴직연금액의 1/2을 합산

4)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초연금액의 최대값은 기준연금액으로 함

- 국민연금 A급여액 등을 산식(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라. 기초연금액 : 부가연금액 이상 ~ 기준연금액 이하로 산정

MAX (A급여액 적용 산식 ①,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②)

1)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이거나 200%이하인 경우

- A급여액 적용 산식 ①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②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2)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 A급여액 적용 산식 ①에 따라 산정
-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참고 국민연금급여액 및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국민연금급여액 기준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기초연금 급여수준
기초연금액의 150% (450,000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액의 75% (225,000원) 이하	300,000원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의 150% (450,000원) 초과	이고	기초연금액의 75%(225,000원) 초과 ~ 기초연금액의 150%(450,000원) 미만	150,000원 ~ 300,000원 사이
기초연금액의 200% (600,000원) 초과	이고	기초연금액의 150% (450,000원) 초과	150,000원 (부가연금액)

예 국민연금급여액 500,000원(A급여액 270,000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급여 수준

- 국민연금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150%초과이며, A급여액이 기초연금액의 75% 초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150,000원~300,000원 사이로 결정

(A급여액 적용산식) { 300,000원 - (2/3 × 270,000원) } + 150,000원 = 270,000원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 750,000원 - 500,000원 = 250,000원

- 각 산식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270,000원)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3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

가. 적용대상

-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법 부칙 제5조]
 - ①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②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나. 산정방법

- 기준연금액의 50% 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 신청자·수급권자 등의 전월말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A급여액 등을 매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
 - ※ 다만, 국민연금 급여가 일괄 조정되는 1월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1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등을 예상 산출하여 1월초 「행복e음」으로 전송되어 1월 급여에 반영
- 「행복e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직역연금공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자동 계산

CHAPTER

Ⅲ

기초연금액의 감액 [법 제8조]

1 부부감액 [법 제8조제1항]

가. 개 요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나. 적용대상

- 부부2인 수급가구

다. 적용방법

- 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개인 단위로 적용)

2 소득역전방지 감액 [법 제8조제2항·시행령 제11조]

가. 개 요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

나. 적용대상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다.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라. 적용방법

- 가구 단위로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감액금액만큼 차감한 후 개인 단위로 배분
 - 즉,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 지급
 - ※ 기초연금액 - 감액금액
 - = 기초연금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가.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기초연금을 지급
- 다만,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감액 이전에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 MIN(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25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60,000원인 경우

-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250,00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30,000원
- ⇒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230,000원

 **예시**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150,000원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60,000원인 경우

- ⇒ ① 산정된 기초연금액 : 150,00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230,000원
- ⇒ 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150,000

나. 부부2인 수급가구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부부2인 수급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산정
 -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배분

- 다만, 부부감액(20%)을 적용한 부부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보다 작을 경우, 부부감액(20%)을 적용한 기초연금액을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결정
- 부부 중 1인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초연금액으로 지급

예시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240,000원, B는 160,000원이고, 소득인정액이 2,304,000원인 경우

- ⇒ ①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320,000원(192,000원 + 128,00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400,000원
- ⇒ ①, 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320,000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A는 192,000원, B는 128,000원
- ※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192,000원, B는 128,000원)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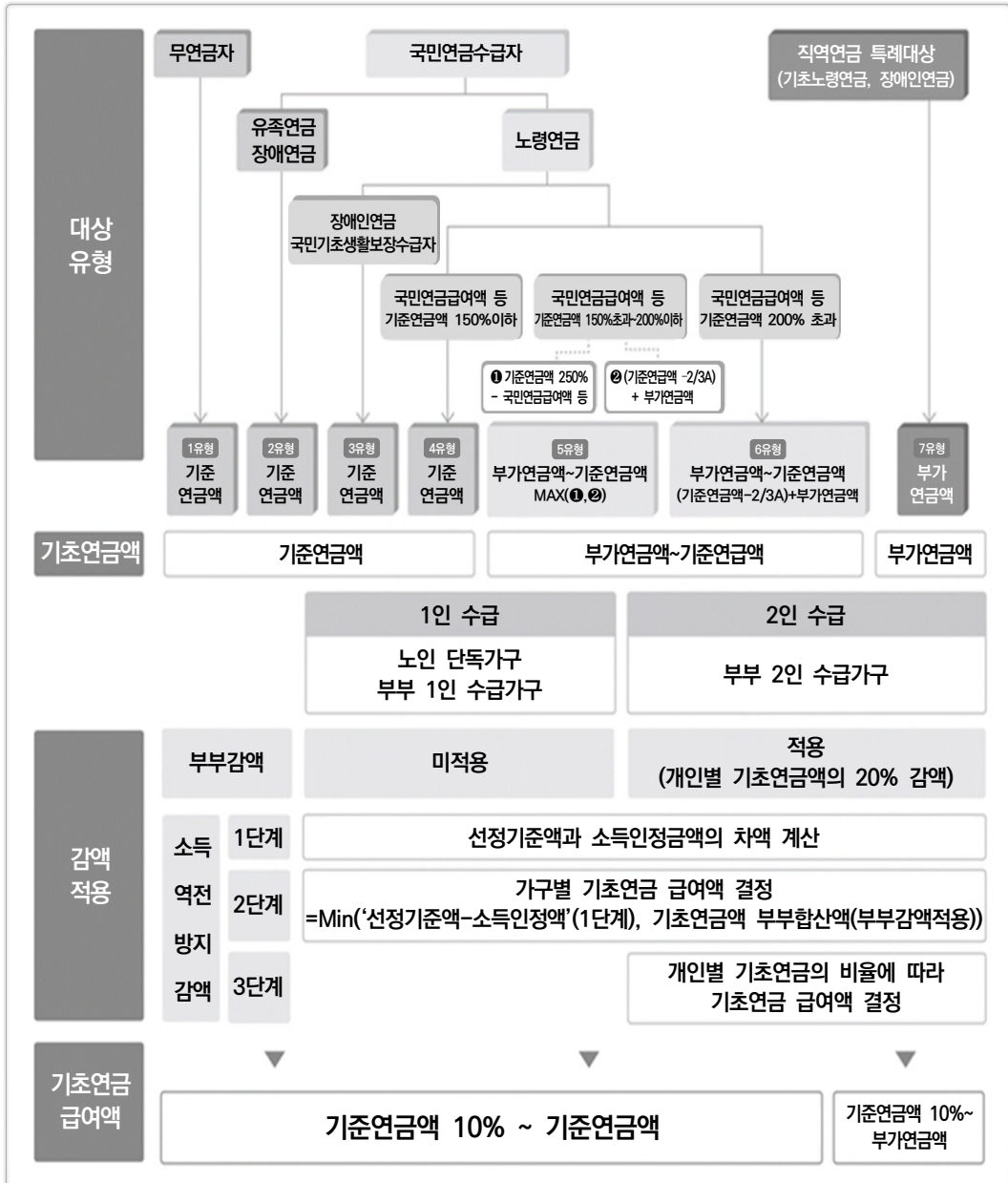
예시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25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554,000원인 경우

- ⇒ ①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400,000원(200,000원 + 200,00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150,000원
- ⇒ ①, 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50,000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부부 각각 75,000원
- ※ 150,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부부 각각 200,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예시 부부의 기초연금액이 각각 A는 300,000원, B는 150,000원인 부부2인 수급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584,000원인 경우

- ⇒ ①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연금액 부부합산액 : 360,000원(240,000원 + 120,000원)
-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120,000원
- ⇒ ①, ② 중 작은 금액을 해당 가구의 기초연금 급여액(120,000원)으로 결정
- ⇒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 : A는 80,000원, B는 40,000원
- ※ 120,000원을 부부감액 적용 후의 개인별 기초연금액(A는 240,000원, B는 120,000원) 비율에 따라 개인별로 비례하여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적용 사례〉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수급대상

대상유형	1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2인 수급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524,000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 (기준연금액 적용) 배우자 : 300,000원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80,000원(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80,000원(㉕)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㉕)인 180,000원으로 결정 ※ Min(㉔ 산정된 기초연금액 480,000원, ㉕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180,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9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2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0,000원인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500,000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90,000원(㉕)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19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㉔ 300,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㉕ 190,00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9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3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500,000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500,000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㉓)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190,000원(㉔)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㉔)인 19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㉓ 300,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㉔ 190,00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9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4유형	(본 인) 국민연금 급여액이 440,000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없음 (소득인정액) 단독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490,000원
기초연금액	본 인 : 300,00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단독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300,000원(㉓)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00,000원(㉔)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0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㉓ 300,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㉔ 200,000원)
		[3단계] 단독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200,000원으로 결정	

2) 국민연금 A급여액등에 따른 산정 대상

대상유형	5유형	(본인) 국민연금 급여액 50만원(A급여액 18만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464,000원
기초연금액	본인 : 300,00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450,000원) 초과 200%(600,000원) 이하인 경우로 [• A급여액 적용 산식¹⁾과 •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²⁾]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인 300,00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1) (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A$) + 부가연금액 = (300,000원 - $\frac{2}{3} \times 180,000$원) + 150,000원 = 330,000원 < 300,000원 2)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 750,000원 - 500,000원 = 250,000원 배우자 : 300,000원(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480,000원(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240,000원(㉕)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㉔)인 24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㉔ 480,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㉕ 240,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 120,000원으로 결정	
대상유형	6유형	(본인) 국민연금 급여액 800,000원(A급여액 405,000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배우자) 국민연금 급여액이 300,000원인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2,644,000원
기초연금액	본인 : 180,000원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600,000원) 초과한 경우로 • A급여액 적용 산식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인 180,000원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1) (기준연금액 - $\frac{2}{3} \times A$) + 부가연금액 = (300,000원 - $\frac{2}{3} \times 405,000$원) + 150,000원 = 180,000원 배우자 : 300,000원('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로 기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적용(부부2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을 적용하여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감액된 기초연금액 : 본인 144,000원 배우자 240,000원으로 가구별 기초연금액은 384,000원(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60,000원(㉕)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㉔)인 6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㉔ 384,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㉕ 60,000원)
		[3단계] 개인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각각의 기초연금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기초연금 급여액	부부의 기초연금 급여액은 본인 30,000원*, 배우자 37,500원으로 결정 * 기초연금 급여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30,000원으로 지급	

3) 직역연금 특례적용자에 대한 산정

대상유형	7유형	(본 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로 기초연금 수급 특례를 인정받은 자 (배우자) 만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급여 등의 수급권이 없는 무연금자 (소득인정액) 부부가구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1,800,000원
기초연금액	본 인 : 150,000원(부가연금액 적용)	
감액적용	부부 감액	부부1인 수급가구로 부부감액 미적용. 따라서, 기초연금액은 150,000원(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1단계] 부부1인 수급가구의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인 300,000원(㉕)
		[2단계]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은 산정된 기초연금액(㉔)인 150,000원으로 결정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㉔ 150,000원,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㉕ 300,000원)
		[3단계] 부부1인 수급가구로 미적용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급여액은 150,000원으로 결정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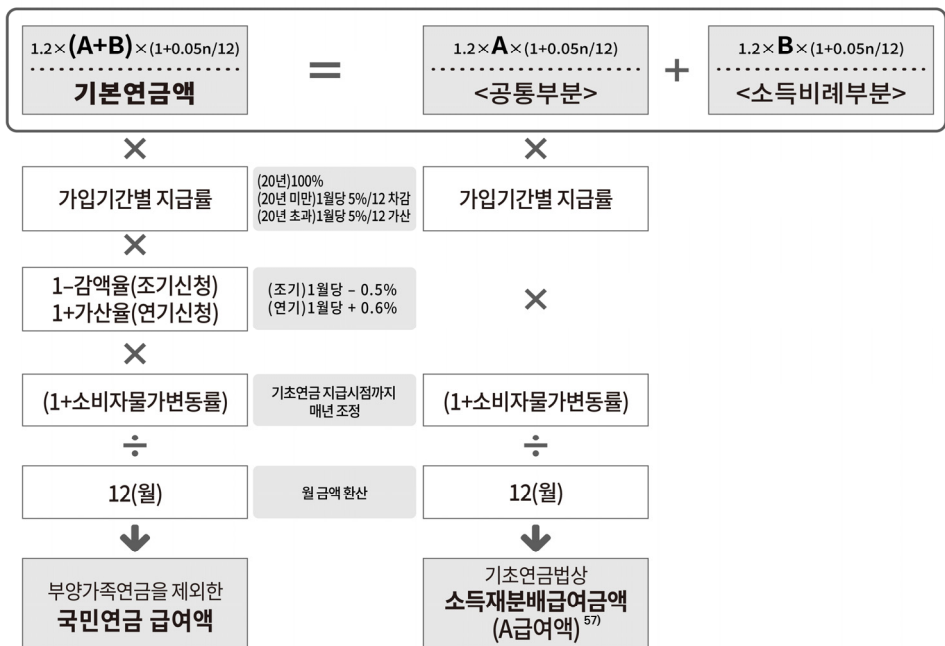
IV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출하여 전송하는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을 「행복e음」에서 자동 적용하여 기초연금액 산출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참고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 1.2 : 비례상수(2028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하여 적용)
A : 연금 수급 前 3개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B :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n : 20년을 초과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월)

- 국민연금 급여(기본연금액)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과 개인별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성

57)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평균액(A값)에 비례하여 개인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산정. 이는 경제활동시의 소득 차이를 연금 지급시 완화하는 장치로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후세대로부터 이전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중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에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A급여액임

* 가입기간이 20년이면 100%, 20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당 5%/12 차감, 20년 이상이면 매 1개월 당 5%/12 가산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초과 ~ 200%이하

- A급여액 적용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산식 중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산정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

- A급여액 적용 산식에 따라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산식을 적용(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다.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대상

1)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및 60세(수급개시연령, 이하동일) 도달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⁵⁸⁾받고 있거나 그 지급을 연기⁵⁹⁾ 중인 사람 및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⁶⁰⁾을 포함

58)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국민연금법」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희망에 따라 55세(수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조기노령연금)

59)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60~64세의 기간 중 1회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노령연금의 지급을 연기하고, 종료시 연기기간에 따라 증액된 노령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60)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64세의 기간 중 「국민연금법」상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수급연령에 따라 일부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음(재직자노령연금)

- 2)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연금 도입·확대 당시 노령연금 수급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자로서 60세 도달, 가입기간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사람(특례노령연금)
- 3)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4) 「국민연금법」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로서 60세 도달, 가입기간 5년 이상을 모두 충족한 사람
- 6) 「연금연계법」 제10조에 의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참고**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되,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

 **주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미청구한 자 및 본인 귀책사유로 지급이 정지된 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포함(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하나, 분할연금 미청구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기준연금액을 적용)

3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가. A급여액의 계산 [법 제5조제4항제2호]

- (노령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수급권자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이하 'A값')을 기초로 산정

참고 구체적인 A급여액의 산정방법⁶¹⁾

$$\text{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times \text{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에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times \text{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지급시점까지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div 12 \text{ (月)}$$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가입기간	1988~1998년	1999~2007년	2008~2027년	2028년 이후
비례상수	2.4	1.8	1.5 ~ 1.215 (매년 0.015씩 감소)	1.2

• A값

- ① 2001년 2월 이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 연금수급 전년도에 평균소득월액
 - ② 2001년 3월 이후 국민연금 지급사유 발생 : 연금수급 전 3개년도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
 - ③ ①, ②에도 불구하고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1,271,595원을 적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 A값에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마다 A값에 5%를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Rightarrow A \times (1+0.05 \times \alpha)$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A값에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12년으로 계산) 마다 A값에 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Rightarrow A \times (1-0.05 \times \alpha)$

61) 1954년 1월생 A급여액 산정 예시 ▶ 국민연금 가입 : 1998년 9월 ~ 2014년 1월(185개월)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60세 도달) : 2014년 1월 13일 ▶ 기초연금 신청 : 2019년 1월 25일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구 분	계	1988년 1월 ~1998년 12월	1999년 1월 ~2007년 12월	2008년 1월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12월
비례상수	-	2.4	1.8	1.5	1.485
가입기간	185개월	4개월	108개월	12개월	12개월
구 분	계	2010년 1월 ~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12월
비례상수	-	1.47	1.455	1.44	1.425
가입기간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개월

⇒ A급여액 227,855.28원

= (2.4 × 4개월 + 1.8 × 108개월 + 1.5 × 12개월 + 1.485 × 12개월 + 1.47 × 12개월 + 1.455 × 12개월 + 1.44 × 12개월 + 1.425 × 12개월 + 1.41 × 1개월) /

185개월 × A × {1 - 0.05 ÷ 12 × (240 - 185개월)} × 1.0656 ÷ 12(월)

▶ 2.4, 1.8, 1.5, 1.485, 1.47, 1.455, 1.44, 1.425, 1.41 :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비례상수

▶ 4개월, 108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1개월 : 국민연금 가입연도별 가입기간 (합계 185개월)

▶ A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에 적용하는 A값(1,981,975원)에 기초연금 신청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한 A값(2,112,021원)

* 국민연금 지급사유발생시점부터 기초연금 신청시점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14~'19) : 1.0656

▶ [1 - (0.05 ÷ 12 × (240 - 185개월))] :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가입기간(55개월)에 대한 감액 비율

- (분할연금 수급권자)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A급여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A급여액의 1/2를 적용
- 이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는 원래의 A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A급여액을 재계산
- ※ 분할연금 미신청자는 A급여액을 계산하지 않음(기준연금액 적용)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법 제62조제1항]

-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시 적용기준

가.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적용 받는 경우

-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중인 경우
 - (A급여액) 연기 중인 기간에 대해 연기 직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노령연금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에 비례)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계산방법과 동일
-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 후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 (A급여액)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국민연금 급여액등) 연기기간의 종료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적용

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조기 지급되는 경우

- (A급여액) 조기 지급·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연령별 지급률 및 소득활동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 (국민연금 급여액등) 조기 지급·소득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감액 적용(연령별 지급률 및 소득활동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적용)

다. 노령연금·연계노령연금 미청구, (일시)정지 등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없는 경우

-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계산방법을 준용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까지 급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예시** 노령연금 미청구 상태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급여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A급여액을 산정함
(다만, 유족연금 선택시 그 때부터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노령연금정지자로 적용)

- 「국민연금법」 제86조제1항, 제122조의2제3항 및 「연금연계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⁶²⁾에는 정지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주의**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정지와 구분 [법 제5조제6항제2호가목]

라. 연금의 소급지급 또는 환수금 총당의 경우

- 지연청구 등으로 2개월분 이상의 연금이 소급하여 지급되는 경우 1개월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연금 급여액에서 환수금을 총당하는 경우(전액 총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 총당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6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권 확인을 위한 서류,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②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단의 확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마.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가입기간이 변동하는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재계산하며, 이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확인)된 달부터 적용

- 체납보험료 납부, 자격변동 등으로 연금액(가입기간)이 변경된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가입기간·연령 요건 충족)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한 경우(임의계속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A급여액 재계산)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정지(재가입)된 후에 재수급할 경우(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A급여액 재계산)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⁶³⁾ 분할납부 중인 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에 추가로 납부한 경우

바.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종별(조기·재직자·연기·특례)에 관계없이 혼인 중 가입기간에 비례

1) 분할연금을 지연신청한 경우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 분할연금 미신청자가 제척기간(5년) 경과 전에 분할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월부터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적용하며,
- 배우자였던 노령연금수급권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부터 변경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적용(미소급)

2)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 분할연금 청구 전에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은 변동 없이 적용
- 분할연금을 지급받던 중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수급권 포기 전 금액을 계속 적용

63)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다시 가입하여 종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반납) 또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가입기간에 산입(추납)

- 분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하여 포기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분할 전 금액으로 복원

※ 시행일(2021.1.1.)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한 자와, 수급자(신청중인 자 포함) 중 시행일 이후에 재결합 사유로 분할연금을 포기하는 자의 배우자(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

※ 그 밖의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의 A급여액 산정은 국민연금 급여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급여액 중 A급여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

사. 「국민연금법」 제53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 적용자 및 법 제127조에 따른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A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3조에 따른 연금액 상한⁶⁴⁾ 적용자는 상한 적용 전의 연금액에서 A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한 적용 후의 연금액에 곱하여 계산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협정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

-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으로 가상하였을 때의 연금액을 산정
-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

64)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월 연금액은 해당 가입자의 최종 5년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체 가입기간 중의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것을 초과할 수 없음(「국민연금법」 제53조)

참고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기준 비교

구 분		A급여액 (B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노령 연금	일반수급자	지급연금액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지급률)	좌동	○
	미청구	예상연금액	좌동	×
	일시중지, 정지	정지 전 연금액	좌동	×
	조기지급	감액 전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미적용)	감액 후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적용)	○
	연 기	연기 중	연기 전 연금액	×
		연기종료	가산 전 연금액	○
분할 연금	수급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A급여액 균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급여액 균분	○
	미청구자	미산정(→기준연금액 적용)	좌동	×
	지급정지자	정지 전 연금액	좌동	×

5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가. 개 요

- 동일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및 「연금연계법」에 따른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중복하여 생길 수 있음⁶⁵⁾
- 그 경우 각각의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급여 조정방법을 감안하여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산정

65) 중복급여 수급권 발생 예시

- ① (국민연금 중복수급)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 ② (연계급여 중복수급) 연계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 ③ (국민연금+연계급여)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발생

나. 기본방향

- 국민연금·연계연금(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수급권에 따라 계산된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법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 다만, 각 법령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가 지급정지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또는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법 제5조제6항제2호가목)
 -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연계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다만,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가 사회보장급여(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법 제5조제6항제2호나목·다목)
 - 「연금연계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
-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아닌 급여 수급자가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 미청구로 급여선택이 없었던 경우에는 현재 수급중인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
 - 급여선택 후에는 선택된 급여에 따라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계산하고 적용시기는 확인된 때부터 적용

다. 적용대상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분할연금 수급권자
 - ※ 단,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자는 제외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라.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계산 및 적용

- 중복하여 수급권이 발생한 급여 가운데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액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만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
 - 「국민연금법」 제56조 또는 「연금연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급여는 A급여액 계산 및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의 지급되는 급여액이 없으나, A급여액을 적용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수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 또는 일시정지 되는 경우
- 중복급여 조정 사유 이외에 각 직역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 중복급여로서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법 제3조제3항제4호)
 - 국민연금 및 연계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2개 이상의 국민연금·연계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 급여에 대한 A급여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⁶⁶⁾
 - 이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분할연금 및 「연금연계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계퇴직연금 이외에 지급되는 급여는 고려하지 않음

마.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및 적용

- 2개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A급여액 산식 적용 대상인 급여와 아닌 급여의 일부가 함께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부 지급되는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수 만큼 유족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균분된 유족연금액의 30%를 합산한 금액
- 「국민연금법」 제82조제2항·제86조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66) 중복급여 수급자의 A급여액 산정 예시

- 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 노령연금 A급여액
- ②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급
: 노령연금 A급여액 + 분할연금 A급여액
- ③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지급
: 연계노령연금 A급여액+ 연계퇴직연금액의 1/2+분할연금 A급여액

-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이 적용된 경우에는 중복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
- 「국민연금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유족연금·장애연금이 지급정지 중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계산하지 않음
-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제외



참고 「연금연계법」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관련

- 「연금연계법」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제2항
 -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
- 「연금연계법」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제2항
 -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

 각 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급여액등 적용 사례

- 「국민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중복급여 수급권		선택급여(지급여)	A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노령 (분할) 연금	분할연금	노령(분할)+분할	노령(분할) A급여액 + 분할 A급여액	노령(분할) + 분할
	유족연금	노령(분할)+유족×30%	노령(분할) A급여액	노령(분할) + 유족 30%
		유족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장애연금	노령(분할)	노령(분할) A급여액	노령(분할)
		장애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중복급여 수급권		선택급여(지급여)	A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연계 노령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 + 연계노령유족×30%	연계노령 A급여액	연계노령 + 연계노령유족 30% +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의 1/2
		연계노령유족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연계노령유족 +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의 1/2
	유족연금 (국민연금)	연계노령+유족×30%	연계노령 A급여액	연계노령 + 유족 30% + 연계퇴직
		유족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유족 + 연계퇴직 또는 유족(연계퇴직이 없는 경우)
	장애연금 (국민연금)	연계노령	연계노령 A급여액	연계노령 + 연계퇴직
		장애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장애 + 연계퇴직
연계 퇴직 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50%	연계퇴직연금액의 1/2 (2개 급여 모두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연계퇴직 + 연계퇴직유족의 1/2
연계 노령 유족 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 연계노령유족×30%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유족연금 (국민연금)	연계노령유족+유족×30%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유족+연계노령유족×30%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노령연금 (국민연금)	연계노령유족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노령+연계노령유족×30%	노령 A급여액	노령+연계노령유족 30%
	장애연금 (국민연금)	연계노령유족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장애+연계노령유족×30%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직역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지급(연계퇴직연금 지급하지 않음) 하게 되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산정하지 않고 기준연금액을 적용

• 각 연금법에 따른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급여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수급종인 급여	중복급여	A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등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노령(분할)연금	유족·장애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분할)	좌동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	좌동
유족·장애연금	노령(분할)연금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연계노령연금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연계노령유족	노령(분할)연금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연계노령연금	미적용 (기준연금액 적용대상)	좌동

* 노령(분할)연금·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유족연금·장애연금 또는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더라도 실제 수급권 발생여부는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므로 청구 전에는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할 수 없음

• 기 타

중복급여 수급권 발생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 연계급여 · 사회보장급여 ²⁾	직역연금 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연계퇴직(유족)연금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사회보장급여 ²⁾	기준연금액

1) 직역연금(법 제3조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2)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6항제2호나목·다목)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 I. 지급 결정 및 통지
- II. 기초연금의 지급
- III. 미지급 기초연금
- IV. 수급권의 보호

CHAPTER

I

지급 결정 및 통지 [법 제13조]

1 지급 결정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조사자결정을 하면 시·군·구 사업과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
 - ※ 기초연금 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제외
- 연금지급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은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기재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생성(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출력 가능)

2 통지

가. 통지방법

- 시·군·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지급예정 연금액 등 결정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서식6호)’를 신청자 등에 통지 (이의신청제도 안내도 포함)
 -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 신청자가 통지서 발송 전에 신청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필로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시·군·구로 이송

나. 통지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 확인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

다. 유의사항

- 기초연금 지급 결정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요청할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제공
 - 다만, 부득이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동의 여부, 제공받은 자, 제공내용 등을 기록)
 - ※ 기초연금 신청, 조사, 수급(권)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법이 정한 보장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됨

CHAPTER

II

기초연금의 지급 [법 제14조]

1 지급 방식

가. 지급 기준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사전신청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 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지급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단,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신청에 의해서 부부1인 수급가구를 부부2인 수급가구로 전환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의 수급권 포기

-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를 희망할 경우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수급권 상실처리 후 수급권을 포기한 그 달까지 연금을 지급함. 다만 급여 생성 이전에 포기하면서 포기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주의 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 말소일이 속한 달에 수급권 상실 처리하되, 기초연금 급여는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주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현 주소지(전입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전 주소지(전출지)에서 지급
 - ※ 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행복e음」에서 급여 확정된 경우에는 급여 확정된 보장기관에서 급여 지급

 주의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각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가 다른 경우

- 동일한 보장가구의 가구원 중 일부가 보장기관이 다른 경우는 먼저 신청 접수된 보장기관이 보장결정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보장결정이 완료되면 주소지가 다른 지자체에 관련 조사결과 및 결정사실을 문서로 통보, 각 보장기관에서는 급여생성 여부 확인
 -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각 보장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며 재책정시 해당 내용을 배우자 주소지 지자체에 문서로 통보
 - 변동관리는 변경신청 받은 보장기관 담당자가 스캔 등록 후 부부 모두 보장 결정

나. 지급 방법

1) 지급 원칙

- 수급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개별입금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2) 대리수령 지급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 ※ 종전 민법에 따른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와 이에 따른 기본증명서상 후견인 기재는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새로이 후견개시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후견등기제도를 통해서만 공시되므로 반드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상기의 경우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우선 안내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리수령으로 지급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민원 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로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3) 직접 지급

-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입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직접 지급하는 경우 「행복e음」 통합상담관리에 철저히 기록·관리

다.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지급일에 기초연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이 가능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6항]

가.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예시**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경우

- ①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A구인 경우 : A구가 지급
- ②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B사인 경우 : B시가 지급
- ③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A구 또는 B시가 아닌 C시·군·구인 경우 : C시·군·구가 지급

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와 사회복지시설 입소협약을 체결한 경우

 **예시** 강원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가 시설입소 협약을 체결하여 A시 노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노인이 주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하기로 협약(MOU)체결

- ⇒ A시 노인이 B시로 주소지 변경 후 시설 입소한 경우 : A시에서 지급
- ※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주소지 행정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입소협약(MOU)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

CHAPTER

Ⅲ

미지급 기초연금 [법 제15조]

1 개요

가. 정 의

-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 급여액

나. 수급자 사망 시 지급방법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절차에 의거,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사망한 수급자의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최소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부양의무자로 인정
 -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의 인정 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
-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청구권자 순위
 -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부모(3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4순위)
 - 동 순위의 청구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
 - 대표자 선정이 어려울 경우 동 순위권자의 수대로 균분한 금액을 청구에 따라 각각 지급

3 청구절차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한 경우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으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우편 송부
- 구비서류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부양의무자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으로 대표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서식12호)’에 동순위 수급권자 모두 서명 또는 인
 -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 ※ 가족관계등록부는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되, 미지급 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첨부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가. 결정통지

-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를 접수한 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나. 지급대상 및 방법

- 청구권자가 우선순위자로서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함
- 미지급 기초연금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에 입금

CHAPTER

IV

수급권의 보호 [법 제21조]

1 원칙

-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음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 개요

-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 (명의자 본인도 입금 불가)



주의 국민연금 안심통장 등 기타연금 수령 압류방지형 통장은 기초연금 급여 지급이 불가능

나. 발급절차

- (신규 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서식18호)'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
- (기존 발급자) 압류방지 가입대상 복지급여*의 기존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 및 사용 가능)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다.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복지급여 계좌 변경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
화면경로 「행복e음」 > 상담·신청 > 계좌관리 > 계좌정보등록관리 > 압류방지계좌등록 수정관리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시 각별히 주의요망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 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기초연금 입금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I. 이의신청

II.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III. 행정심판

CHAPTER

I

이의신청 [법 제22조]

가. 이의신청 주체 및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이의신청 주체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나. 이의신청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⁶⁷⁾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⁶⁸⁾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기초연금액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

67)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

68)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다. 이의신청 절차

1) 접수방법

- 지급의 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주소지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서면으로 접수
 - ※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서식8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 신분증
 - ※ 배우자가 대리신청인인 경우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3) 이의신청서 송부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이의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즉시 송부

4) 심사·처리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군·구는 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
 - 직역연금 관련 사항은 해당 직역연금공단에 공문요청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국민연금 A급여액, 국민연금급여액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사실 관계 확인 후 결과 반영
- 이의신청 결정
 - (각하) 이의신청이 부적절한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미수용하는 결정
 - (결정변경)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하는 결정

- 이의신청 심사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조사 의뢰 전에 이의신청자에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방문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 의뢰 시 조사에 필요한 수급(희망)자와 필요시 그 배우자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및 확인요청 내용 등에 대해 기재

5) 결과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서식14호)’를 서면으로 통지
 -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 단, 청구인이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시·군·구로 이송

라.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급여신청 건) 급여신청월로 소급 적용(사전신청의 경우 지급월로 소급)
- (급여신청 이외의 건) 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마.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해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CHAPTER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가. 이의신청위원회 기능

- 시·군·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조사결과를 심의·의결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대상 인정에 대한 심의·의결
-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심의·의결

나.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가능
 - ※ 위원회 명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이의신청위원회’라 함
 - 시·군·구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이의신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
 - 시·군·구에서 임명하거나 위촉
 -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공동으로 위촉

●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의 자격

- 관계공무원, 외부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직원 등)

※ 위원구성 예시 : 위원장 기초연금 담당국장, 간사 기초연금 담당자, 연금·사회복지분야 외부 전문가 등

라. 이의신청위원회 운영

●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 또는 서면심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

● 시·군·구는 이의신청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마. 이의신청위원회 논의사항

● 급여결정·변경·지급정지·수급권 상실 등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재산가액의 산정 및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특례 적용을 위한 이의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례 적용 가능

- 가구원에서 제외하는 범위 관련 사항
 - 사실이혼을 주장하나, ‘사실이혼관계확인서(서식19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급자동차 중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사항
- 기타(증여)재산 산정에 관련 사항
 - 화재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복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지출비용을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하는 사항
 - 사업부도 등으로 자녀의 생활이 현저히 곤궁하여 자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 등(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 등)
 -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중 ‘중증환자로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향후 일정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의 의료비를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하는 사항

CHAPTER

Ⅲ

행정심판

가. 개요

- (의의)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심판기관
 - 재결청 : 처분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
 -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대상 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법」 제3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법」 제13조]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을 피청구인 (의무이행심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 하여 청구
 -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 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법」 제23조]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행정심판법」 제6조·제23조제1항]

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행정심판법」 제43조·제44조]

- 각하재결-행정심판 제기 요건의 흠결
- 기각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인용재결-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사정재결-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마. 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7

수급자 관리

I. 수급자 사후관리

II.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III.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IV.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CHAPTER

I

수급자 사후관리

1 개요

가.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재산, 직역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액, 주소지 변경 등

나. 확인방법

- 수급자 신고 또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현장확인 등 확인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현장확인조사를 의뢰
-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등록관리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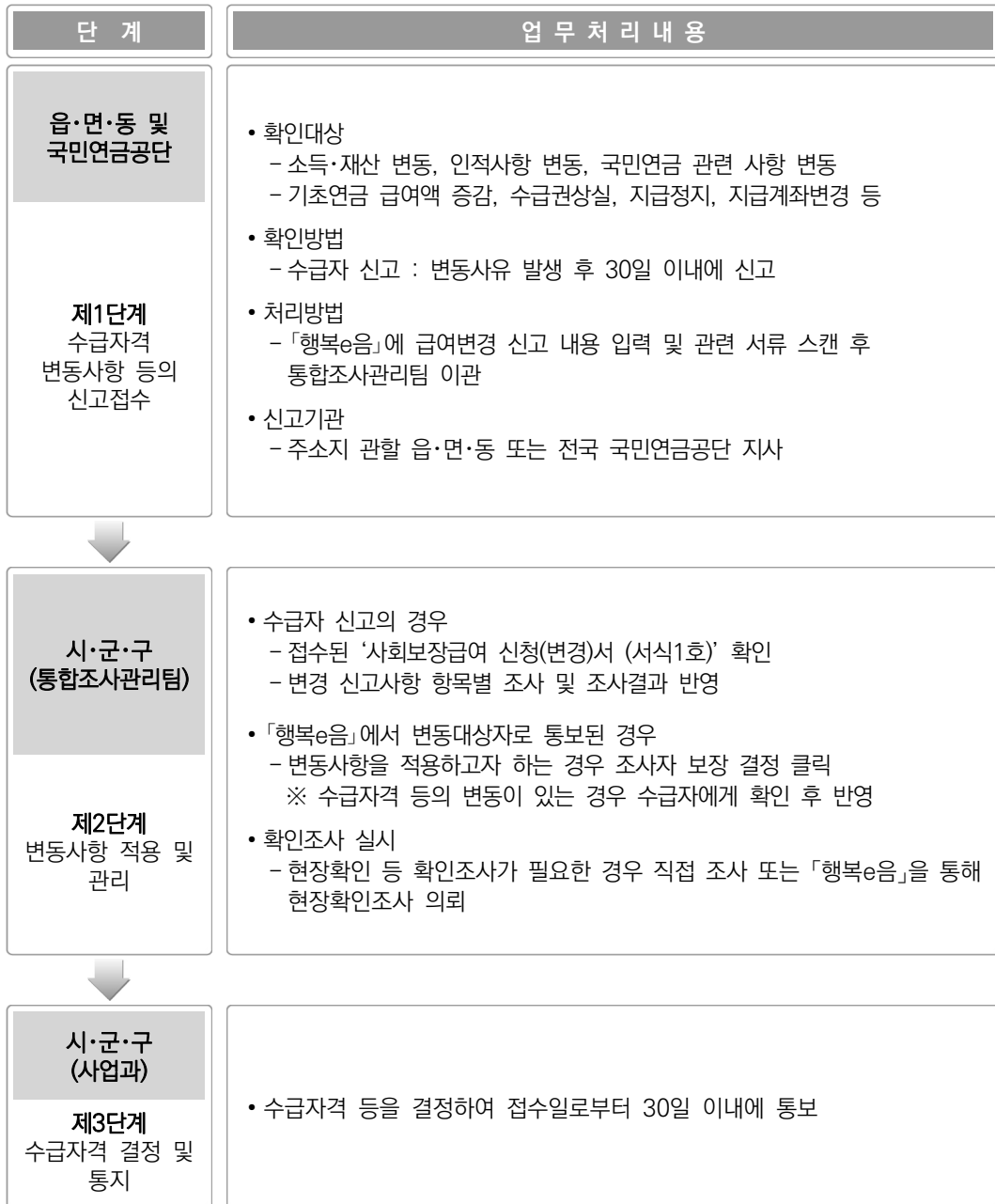
〈변동사항의 지급반영 시점〉

적용방법	정보종류	인적 사항	소득·재산 사항	국민연금 관련사항
지급 반영 시점*	기초연금 급여액 증감	발생한 다음 달부터	확인(통보)된** 달부터	확인(통보)된 달부터
	수급권 상실	발생한 다음 달부터	확인(통보)된 다음 달부터	-
	지급 정지 및 지급재개	발생한 다음 달부터	-	-

* '지급반영 시점'이란 변동사항을 급여지급에 반영하는 시점을 의미

** '확인(통보)시'는 수급자 신고 또는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을 의미

2 업무흐름도



CHAPTER

II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신고사항[법 제18조]

가.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배우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 등
※ 주소지 변경 사항은 「행복e음」으로 확인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과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
**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에 관한 직역연금의 퇴직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수급권 정보
- (지급 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입소, 국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등의 사유 소멸

나. 소득·재산 사항

-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사업자등록, 휴업·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 예금, 증권(비상장주식 포함), 채권, 연금상품(주택·농지연금 포함)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 국민연금 관련 사항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 급여액의 변동
 - 연계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직역연금 수급액 변동

2 신고절차

가. 신고방법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
 - 국민연금공단이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필수 제출서류 송부(등기우편)

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각 1부
 - ※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서식13호)'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기초연금관련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배우자가 신고하는 경우 신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로 의제 처리

3 처리기한 및 통지[시행규칙 8조]

가. 처리기한

- 시·군·구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의 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
-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

나. 통지방법

- (원칙)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통지
 - 신고접수에 따른 결정통지 : 지급변경(상실)통지서(서식6호)
-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전자우편(e-메일), 전화 등

참고 중점관리 수급자 조사

(1) 대상

-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 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중점관리 대상)

예시 중점관리 대상 및 분야

-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 입금 수급자
- 사실혼·사실이혼 관계에 있는 수급자(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
- 혼인신고 후 국내체류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의 수급자
-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 실종,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수급자
- 85세 이상 고령 수급자
-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2) 조사수행 방법

- 보건복지부의 연간조사계획 및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간 확인·조사 수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탁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한 확인·조사는 위탁자가 수행한 것으로 봄

(3)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등을 변경하고, 환수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CHAPTER

Ⅲ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가. 기초연금 급여액의 증감 사유

- 인적사항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소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가 일반수급자로 전환* 등
-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순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포함) 및 위험 직무순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을 받고 5년이 경과한 경우
- 소득·재산사항(증가, 감소)
- 국민연금 급여액등 변경, 국민연금 A급여액 변경 등

나. 변동시점 및 지급반영

-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주소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 등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 ※ 사실혼·사실이혼의 경우 신고한 달을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로 간주하여 처리
- 소득·재산사항 변동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의 변동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증가 또는 감소)을 지급

다. 처리절차

- 결혼·이혼(사실혼·사실이혼 포함)
 - 수급자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등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 급여액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 ※ (부부2인 수급 가구가 사실 이혼한 경우) 사실이혼의 경우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행복e음」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한 달을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로 보아 신고한 달에는 부부2인 수급 기준으로 연금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 급여액 지급
- 주소지 변경
 - 주소지 변경은 별도의 수급자 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 계약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처리

전 출	전 입
• 전출처리 • 원본서류는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이 원칙, 관련 서류는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전출입 변동사항 확인 처리 • 예외적으로 관련서류 이송이 필요할 시 사본 이송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 및 소멸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연금 수급권 발생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여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급여 변경처리
- 특례를 적용받는 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로 전환
 - 「행복e음」 변동알림을 통해 확인하여 급여 변경처리

● 소득·재산사항(증가, 감소)

- 수급자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적용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의 변동 등

-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회신된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변동자료를 자동반영하여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행복e음」을 통해 회신되기 이전에 신청자·수급권자가 변경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 A급여액 자료 또는 소명자료(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 공적이전소득을 산정하고, 변경된 A급여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지급

※ 자연신청 등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지역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더라도 수급자 신고를 통해 확인된 달부터 A급여액이 변경됨에 유의

화면경로 「행복e음」 > 상담·신청 > 신청관리 > 신청정보등록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 > 전체 서비스 보기 > 기초연금맞춤정보안내 > A급여액조회 또는 「행복e음」 > 급여 > 급여대상자 관리 > 국민연금 A급여액 연계수신현황

- 다만, 수급자 신고에 의해 기초연금 급여액을 변경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동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예상급여액 확인 후 해당 월 기초연금 급여액에 상계처리 필요

화면경로 「행복e음」 > 급여 > 급여대상자 관리 > 복지급여 예상액계산기 > 기초연금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이 8월에 변경 결정된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정보는 8월말을 기준으로 9월초에 「행복e음」에서 반영
- 「행복e음」으로 확인(통보)된 달인 9월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지급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국민연금 A급여액이 8월에 변경 결정되어 당월 신청자·수급권자가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등 및 A급여액 정보는 「행복e음」 A급여액 자료 및 소명자료(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를 통해 8월 기준 확인
- 수급자 신고에 의해 확인된 달인 8월부터 변경된 기초연금 급여액으로 지급

●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CHAPTER

IV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가. 수급권상실 사유 [법 제17조]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나.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주민등록번호 정정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 선정기준액(소득·재산) 초과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다. 처리절차

● 사망

구 분	적용기준	처리절차
단독가구 노인 사망	수급자 사망월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월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 2인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수급자 사망월의 다음 달	-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월	배우자의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 1인 연금 지급
	배우자 사망월의 다음 달	-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단독가구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및 통지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삭제하고,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으로 반영(별도의 변경신고는 불필요)

●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구 분	적용기준	처리절차
단독노인 또는 부부노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월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월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 2인 연금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월의 다음 달	- 말소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월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 1인 연금 지급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월의 다음 달	- 말소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재외국민⁶⁹⁾ 주민등록자

구 분	적용기준	처리절차
단독노인 또는 부부노인	수급자의 재외국민 등록월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까지 연금 지급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수급자의 재외국민 등록월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까지 부부가구 2인 연금 지급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수급자의 재외국민 등록월의 다음 달	•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재외국민 등록월	• 배우자의 재외국민 등록일이 속하는 달까지 부부가구 1인 연금 지급
	배우자의 재외국민 등록월의 다음 달	•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의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 기초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 거주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국외이주 신고하여 주민등록은 유지(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관리)되나,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정정 전 연금지급 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6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재외동포(재외국민)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



예시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처리방법

• 주민등록번호(연령) 상향 조정 시

- 2021년 3월 10일 기초연금 신청, 2021년 8월 10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상향)된 경우
【1956년 3월 1일 생(65세) → 1955년 3월 1일 생(67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도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2021년 3월~)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고, 기초연금 급여액 변경 등 별도 조치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연령) 하향 조정 시

- 2021년 3월 10일 기초연금 신청, 2021년 8월 10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향)된 경우
【1956년 3월 1일 생(65세) → 1957년 3월 1일 생(63세)】
⇒ 2021년 3월~8월까지 지급된 기초연금은 환수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처리

•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수급자 신고, 공적자료 갱신 또는 확인조사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기초연금액 적정성 확인 후 급여
변경·정지·상실 결정 및 통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공적자료를 통해 직역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확인하여 급여 변경·정지·상실
결정 및 통지

2 지급정지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법 제16조]

가. 지급정지 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나. 적용시점 및 지급기준

- (지급반영시점)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기초연금 급여액을 지급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정지
 - ※ 지급정지 사유 소멸 시 신고한 달이 아닌 소멸한 달의 다음 달이 연금 개시 기준일에 유의
 - ※ 지급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는 소급 지급하지 않음

다. 지급정지사유별 업무처리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확인방법
 - 「행복e음」 및 관계기관(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을 통한 공적자료(형의 종류, 선고일, 수용사실 등) 확인
 -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 또는 법원에서 발행하는 법원 판결문을 발급받아 '선고일 및 형의 종류(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확인
- 지급정지 기간
 - (형 선고 후 입소)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입소 후 형 선고) 형 선고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2)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확인방법
 - 공적자료 또는 「행복e음」 변동알림을 통해 실종신고 여부, 실종신고 접수일 확인

- 실종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자,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급 정지

● 지급정지 기간

-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제 후 변경 신고한 경우 신고 해제한 달까지 지급정지 후 다음 달부터 지급



예시 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지급정지 기간

- 2021년 3월 10일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접수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2021년 4월 8일의 다음 날인 2021년 4월 9일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이므로 2021년 5월 급여부터 지급정지한 후, 2021년 8월 10일 실종·가출 신고 해제접수 또는 변경신고 시 그 다음 달인 2021년 9월부터 급여 재개

3)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확인방법

- 국외 체류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60일을 의미하며 6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 날임
 - ※ 법 시행(2014년 7월 1일) 이전 출국자는 180일 기산
- 「행복e음」 및 관계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을 통한 공적자료(출국일, 입국일 등) 확인
- 필요 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 사본 징구 및 「행복e음」 입력

화면경로 「행복e음」 > 자료정비 > 공통자료정비 > 복수국적자 정보관리

● 지급정지 기간

-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정지
 - ※ (2021년 5월 2일 출국하여 2021년 10월 2일 입국하는 경우) 출국일 다음 날인 2021년 5월 3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7월 1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8월에 지급정지한 후,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11월부터 급여 재개

참고 국외체류 중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국외체류 기간이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봄

(사례) 2021년 7월 28일 출국 후 2021년 9월 1일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9월 30일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확인 및 「행복e음」 변동알림으로 통보
- 국외체류기간 기산 : 출국일 다음 날인 2021년 7월 29일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날은 9월 26일임
- 국외체류 60일이 경과되지 않아 신청접수는 가능하나, 결정이전에 60일이 도래한 경우 신청한 달인 9월분은 지급하되, 60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에 해당하므로, 10월부터는 지급 정지

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단,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정지하며 거주불명등록자가 수급을 위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을 재개 (단, 소급지급하지 않음)

구 분	1인 수급가구	2인 수급가구
지급정지	거주불명등록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거주불명등록이 된 다음 달부터 부부1인 수급가구로 처리
지급재개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지급)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2인 수급가구로 처리 (주민등록 재등록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 재등록한 다음 달부터 부부2인 수급가구로 지급)

-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 수급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해당 읍·면·동의 거주사실 확인과 실제 거주지 읍·면·동(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통보 내용에 의해서도 해당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
 - ※ (거주불명등록자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 대해 매월 「행복e음」으로 회신된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어 '적합'으로 회신되면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부적합'으로 회신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정지

구 분	1인 수급가구	2인 수급가구
지급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정지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1인 수급가구로 처리
지급재개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소급지급하지 않음)	실제 거주여부가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부부2인 수급가구로 지급 (소급지급하지 않음)

라. 처리방법

-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통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행복e음」 공적자료 또는 변경신고를 통해 소득·재산 변경사항 확인 후,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마. 급여계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급여계좌의 변경
 - (지급반영시점) 수급자 신고(위임받은 대리신고 포함)에 의해 확인된 달부터 변경 계좌로 지급(급여 확정일 이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

8

환수 및 벌칙

I. 기초연금액의 환수

II. 과태료

III. 벌칙

CHAPTER

I

기초연금액의 환수 [법 제19조]

1 개요

가. 환수금의 범위

-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금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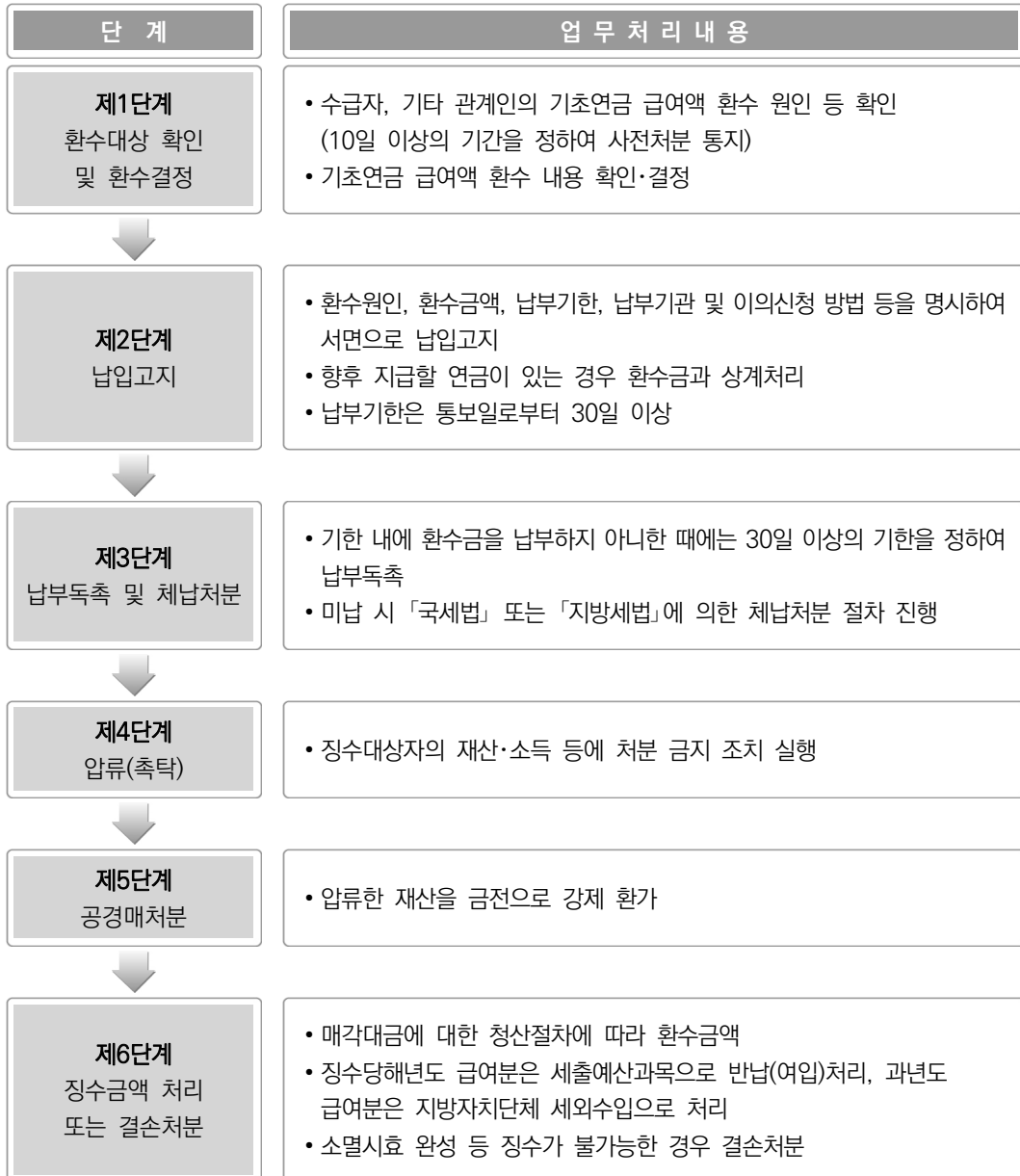
나.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기관

- 환수대상의 확인 및 환수 결정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행함

다.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환수대상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 확인(통보)일 등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또는 정지하고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처리
- 환수대상이 확인되었으나, 수급자격은 유지되고 기초연금 급여액을 변경해야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확인(통보)일 기준으로 기초연금액 변경 및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

2 업무흐름도



3 환수금의 결정

가. 환수대상자 결정

1) 환수대상

- 수급권의 상실 등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자 등
- 지급정지 기간 중에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자 및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자 등
- 수급권이 있지만 수급권에 따른 기초연금 급여액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 전·출입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지급 받은 자
 - 단독 수급에서 부부2인 수급으로 변경되면서 부부감액 되지 않고 지급받은 자
 - 기타 담당자 착오 등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자

※ 수급자를 대리하여 배우자(또는 부양의무자 등)가 신청하여 수급 중인 경우에도 그 연금 지급이 부당하여 환수결정을 하는 때에는 연금 수급자 본인을 환수대상자로 함

2) 결정시점

- 수급자 신고 또는 기타 확인조사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초연금액 환수결정 등 환수절차 이행

3) 관리

- 관할 시·군·구에서 환수결정 즉시 환수 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참고 환수징수 유형

- **보장비용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대상의 금액 환수
- **반환명령**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정지, 중지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대상의 환수금액

나. 환수금의 산정

1) 환수 범위

-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수급권이 상실된 이후 또는 지급정지기간에 지급된 기초연금 급여액 전부
 - 정당한 기초연금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 그 지급액 중 초과지급 금액
- 지급액에 대한 이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

2) 이자 가산

- 이자 가산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이자의 계산
 - 계산기간 : 해당 기초연금을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
 - 계산방법 : 연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에 산입한 후 이자액 계산
- 적용 이자율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1.6%	1.8%	1.2%	0.8%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부당이득 환수 시 가산할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매년 1월초 「행복e음」에 반영

3) 끝수의 처리(법 제24조)

- 산정된 환수 금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버림)

4)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등기우편 등의 행정비용(3천원)이 환수금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 제외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환수금도 징수하여야 함

예시 환수금의 산정

※ 이자의 계산은 「행복e음」에서 설정 시 자동 계산됨

-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 8월~10월 사이 기초연금 20만원/월 수령
- 이자율 : 2014년도 연 2.4%, 2015년도 연 2.0%, 2016년도 연 1.4%, 2017년도 연 1.1%, 2018년도 연 1.6%, 2019년도 연 1.8%, 2021년 연 0.8%
- 총 지급액 : 600,000원(200,000원 × 3개월)
- 고지일자 : 2021년 4월
 - 기초연금을 부당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달(2014년 8월, 9월, 10월 각각)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2021년 3월)까지의 이자액 가산

구 분	이자 적용 기간	이자 계산식	산출 이자액*
2014년 8월 지급분 이자 (2014년 8월 ~2021년 3월)	2014년 8월~12월	200,000원 × 0.024 × 5/12	2,000원
	2015년 1월~7월	200,000원 × 0.020 × 7/12	2,330원
	2015년 8월~12월	204,330원 × 0.020 × 5/12	1,700원
	2016년 1월~7월	204,330원 × 0.014 × 7/12	1,660원
	2016년 8월~12월	207,690원 × 0.014 × 5/12	1,210원
	2017년 1월~7월	207,690원 × 0.011 × 7/12	1,330원
	2017년 8월~12월	210,230원 × 0.011 × 5/12	960원
	2018년 1월~7월	210,230원 × 0.016 × 7/12	1,960원
	2018년 8월~12월	213,150원 × 0.016 × 5/12	1,420원
	2019년 1월~7월	213,150원 × 0.018 × 7/12	2,230원
	2019년 8월~12월	216,800원 × 0.018 × 5/12	1,620원
	2020년 1월~7월	216,800원 × 0.012 × 7/12	1,510원
	2020년 8월~12월	219,930원 × 0.012 × 5/12	1,090원
	2021년 1월~3월	219,930원 × 0.008 × 3/12	430원
	합계		33,050원
2014년 9월 지급분 이자 (2014년 9월 ~2021년 3월)	2014년 9월~12월	200,000원 × 0.024 × 4/12	1,600원
	2015년 1월~8월	200,000원 × 0.020 × 8/12	2,660원
	2015년 9월~12월	204,260원 × 0.020 × 4/12	1,360원
	2016년 1월~8월	204,260원 × 0.014 × 8/12	1,900원
	2016년 9월~12월	207,520원 × 0.014 × 4/12	960원
	2017년 1월~8월	207,520원 × 0.011 × 8/12	1,520원
	2017년 9월~12월	210,000원 × 0.011 × 4/12	770원
	2018년 1월~8월	210,000원 × 0.016 × 8/12	2,240원
	2018년 9월~12월	213,010원 × 0.016 × 4/12	1,130원
	2019년 1월~8월	213,010원 × 0.018 × 8/12	2,550원
	2019년 9월~12월	216,690원 × 0.018 × 4/12	1,300원
	2020년 1월~8월	216,690원 × 0.012 × 8/12	1,730원
	2020년 9월~12월	219,720원 × 0.012 × 4/12	870원
	2021년 1월~3월	219,720원 × 0.008 × 3/12	430원
	합계		22,050원
2014년 10월 지급분 이자 (2014년 10월 ~2021년 3월)	2014년 10월~12월	200,000원 × 0.024 × 3/12	1,200원
	2015년 1월~9월	200,000원 × 0.020 × 9/12	3,000원
	2015년 10월~12월	204,200원 × 0.020 × 3/12	1,020원
	2016년 1월~9월	204,200원 × 0.014 × 9/12	2,140원
	2016년 10월~12월	207,360원 × 0.014 × 3/12	720원
	2017년 1월~9월	207,360원 × 0.011 × 9/12	1,710원
	2017년 10월~12월	209,790원 × 0.011 × 3/12	570원
	2018년 1월~9월	209,790원 × 0.016 × 9/12	2,510원
	2018년 10월~12월	212,870원 × 0.016 × 3/12	850원
	2019년 1월~9월	212,870원 × 0.018 × 9/12	2,870원
	2019년 10월~12월	216,590원 × 0.018 × 3/12	970원
	2020년 1월~9월	216,590원 × 0.012 × 9/12	1,940원
	2020년 10월~12월	219,500원 × 0.012 × 3/12	650원
	2021년 1월~3월	219,500원 × 0.008 × 3/12	430원
	합계		22,050원
이자액 합계			63,050원

*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환수 결정금액 663,050원=2014년 8월~10월 기초연금액 600,000원+이자액 63,050원

다. 납부 방법

1) 전액 일시납부 원칙

- 납부방법은 전액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 납부방법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수급자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
 - 선납 후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상계처리(기초연금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함
- 분할 납부 허용
 - 관할 시·군·구는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환수대상금액(이자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할 횟수를 제한하나, 부득이한 경우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환수금액(이자 포함)	분할 횟수
25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회 이내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회 이내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0회 이내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회 이내
300만원 이상 ~	36회 이내

- 분할 납부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음

2) 상계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 불가)
- 환수금 상계처리시 해당내용을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4 징수절차 [법 제20조]

가. 납부통지

- 시·군·구는 기초연금액 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처분 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환수 결정 및 등록
- 환수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고,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원인,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환수대상자가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연금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이득을 취한 자. 다만, 실제 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됨

나. 납부독촉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 경매 등) 진행

다.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년도 급여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여입하고,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5 소멸시효 [법 제23조]

- 기초연금 급여액을 환수할 시·군·구의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중단사유 및 재기산일

중단사유	재기산일	비 고
- 최초고지 및 (최초)독촉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 중단은 최초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 승인(일부납부, 총당, 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 날	
- 압류, 참가압류, 교부청구	압류해제일의 다음 날	

예시 소멸시효 기산일의 산정

-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이 없는 자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초연금을 지급받았으며 환수 결정일은 2021년 1월 9일인 경우
 - 5년 경과로 인해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결손처분 대상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환수 대상
 - 일반적으로 환수 결정시점으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그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은 결손처분 대상이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수 대상

6 결손처분

가. 결손처분 대상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 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연금액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행방불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결손처분 전에 반드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참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 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나. 결손처분 방법

- 시·군·구는 체납된 환수금의 채권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된 경우 ‘이의신청 위원회 및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환수금의 결손처분 심사 후 7일 이내에 「행복e음」에 반드시 심사결과를 입력·관리해야 함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외함

CHAPTER

II

과태료 [법 제31조]

1 과태료

가. 개요

- 변동사항 미신고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 기초연금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함

나. 과태료부과 업무흐름도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제1단계 위반행위 여부 확인·결정	•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정
제2단계 과태료부과 통지	•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명시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지정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 이의신청 1)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제기 가능 2)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제3단계 압류(촉탁)	• 징수대상자의 재산·소득 등에 처분 금지 조치 실행
제4단계 공경매처분	•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제5단계 징수금액처리	• 당해년도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과년도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제6단계 종결	• 종결

2 과태료 사유 확인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3 과태료 결정

가. 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6	12	2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6	12	2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2항	3	6	10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
- 보건복지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 특별자치·특별자치도·시·군·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나. 통지

- 시·군·구는 과태료 부과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보
- 시·군·구는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과태료 부과

다.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라.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명시

CHAPTER

Ⅲ

벌칙 [법 제29조·제30조]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제공·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제공·누설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부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9

비용의 부담 및 현황관리

I. 비용의 부담

II.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CHAPTER

I

비용의 부담 [법 제25조·시행령 제23조]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

- (국가부담비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

〈 별표 2 기초연금 국가부담 비율 〉

• 산정기준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80 이상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산식 = $\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자원}}{\text{일반회계 총계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
 -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

- ** 노인인구 비율(%) 산식 = $\frac{\text{65세이상노인인구수}}{\text{전체인구수}} \times 100$
-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
 -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

- (지방비 부담비율)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와 시·군·구(자치구)가 상호 부담
-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2 부담금의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 국가는 매년 **별표 2**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
 - 시·군·구의 경우
 - 국가는 매년 **별표 2**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에 지급하고,
 -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
- ※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른 추가부담비용은 제외

3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

-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

참고 거주지 변경 시 기초연금 지급

- 매월 15일 이전 전입 : 현 주소지(전입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매월 16일 이후 전입 : 전 주소지(전출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
 -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

참고 남은 금액 반납 시기

- 시·도는 기초연금 예산 집행 이후에 국가부담금을 정산하여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해 1/4 분기까지 반납

4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 국가는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음
- ※ 다만,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음

〈 기초연금 유사중복사업 판단 지표 〉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연금과 유사한 복지사업의 신설 및 변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자료이며 절대적 판단기준은 아님

5 부담금의 지급

-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35퍼센트 미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군·구

〈 별표 2의2 기초연금 국가추가부담 비율 〉

- 국가 추가부담비용은 ㉡에서 ㉣을 뺀 금액
 - 이 경우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름
 -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 ㉣ 국가가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더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시·군·구가 연간 부담하는 비용

구분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		
		2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	100분의 70	100분의 3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8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분의 2

*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 산식 = $\frac{\text{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순계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text{세출예산 순계규모 (일반회계+특별회계)}} \times 100$

-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

CHAPTER

II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시행령 제24조]

수급자의 급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기록 관리·보고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구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함 [시행령 제24조제1항]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⁷⁰⁾
 -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⁷¹⁾
 - 기초연금 신청대장
 - 분담금의 정산 내역

2 수급자의 현황보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시·군·구는 아래의 사항을 관할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기초연금 신청대장은 일일 보고
 - 분담금의 정산 내역은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보고

3 「행복e음」[「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의 기록·관리 및 보고는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행복e음」으로 업무수행

70)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공통서식 별지 제8호): 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71)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서식15호): 관할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서 식

서 식 목 록

■ 서식 1 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10
■ 서식 2 호 ■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15
■ 서식 3 호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16
■ 서식 4 호 ■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18
■ 서식 5 호 ■	복지대상자 요급 감면 (대행)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219
■ 서식 6 호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20
■ 서식 7 호 ■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23
■ 서식 8 호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24
■ 서식 9 호 ■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25
■ 서식10호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226
■ 서식11호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27
■ 서식12호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29
■ 서식13호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31
■ 서식14호 ■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33
■ 서식15호 ■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34
■ 서식16호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235
■ 서식17호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236
■ 서식18호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37
■ 서식19호 ■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38
■ 서식20호 ■	사용대차 확인서	239
■ 서식21호 ■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240
■ 서식22호 ■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41

※ 「행복e음」으로 관리되는 대장성격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공통서식 별지 제7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별지 제8호],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공통서식 별지 제10호]는 동 지침에 수록하지 않았으며,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의 ‘행정규칙’에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참조

【서식1호】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1. 배우자 관계 ²⁾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³⁾ :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⁴⁾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⁵⁾ : _____, _____									
부양의무자 ⁶⁾	수급자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급여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⁷⁾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작성방법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2),3) 해당자에 한함

4),5) 이통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7) 동일보장기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통장(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보장구분	사회보장급여 내용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자가 [] 임차 ⁹⁾ [] 기타 ⁹⁾ [] 교육급여	
영유아	[]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 가정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아동수당	[]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② ③	
아동·청소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통신사 [] KT [] SK브로드밴드 [] LG U+ [] SK 텔레콤 []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주민번호 :]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 연장신청)	
노 인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장 애 인	[] 장애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기 타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급여 [] 시설이용입소 [] 차상위 자산형성 [] 타법 의료급여10)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자격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센터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센터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가족 사항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등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인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행정정보공공데이터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
선택적 동의	동 의 (√ 체크)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 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 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요금감면(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8)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9)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0)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3 면)

안 내 사 항		
처 리 기 한	- 14일 : 유아학비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관 계 법 률	보장구분	해당 법률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아동·청소년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노인	기초연금법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타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신청시 구비서류		추가 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Ⅰ 서식2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9.4.1>

소득·재산 신고서 [☐ 신규 ☐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 항	근로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소득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재 산 사 항	(주택, 건물, 시설물)	건축물	원	토 지	원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원	원	원	원	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금융재산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가구류(원) □ 기타(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소계 (A-(B+C+D))	원	원	원	원	원	원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C) 부채 상환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임대보증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개 인 간 부 채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파부양보조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조사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Ⅰ 서식3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1.1>

(앞 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아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 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제와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4호 ■ 〈개정 2015.1.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동의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동의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 (사무실)	
						휴대전화	
위의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및 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초연금수급 희망자(본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기 재 요 령	○ 연락처는 집전화와 사무실 또는 개인전화(핸드폰) 또는 연락이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를 함께 기입하여야 합니다.(비상시 연락을 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상단에 기입)						
유 의 사 항	○ 금융·신용·보험정보의 제공통보는 금융·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개인별로 위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송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우편물에 대한 취급 부주의와 본인 외의 가족 등의 열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정보등의 유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국민연금공단 및 금융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일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Ⅰ 서식5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0.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자 격 구 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감면 서비스	전체 신청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선택 신청	[] 전기요금	[] TV수신료 면제	[] 휴대전화요금		
		[] 지역난방요금	[] 도시가스요금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가 족 사 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 감면 및 복지자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자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Ⅰ 서식6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1>

[1 면]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변경 · 정지 · 중지 · 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 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기초연금 급여액*	금융기관	계좌번호
본 인		원		
배우자		원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 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 · 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한 ·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 대 상 제 외

신청 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대상 제외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사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11세 이상 만18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 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71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사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Ⅰ 서식7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Ⅰ 서식8호 Ⅰ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처분내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9호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연금수급 희망자 또는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내 용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15조, 제18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기초연금 수급권 변경·상실신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 (서명 또는 인)
 위임자(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본인 및 배우자)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10호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 안내
본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의 사람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 안에 ☒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
-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소득, 재산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는 소득조사,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에게 소득정보, 재산정보 및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수급희망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11호 ■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제 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대 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관계	

위와 같이 기초연금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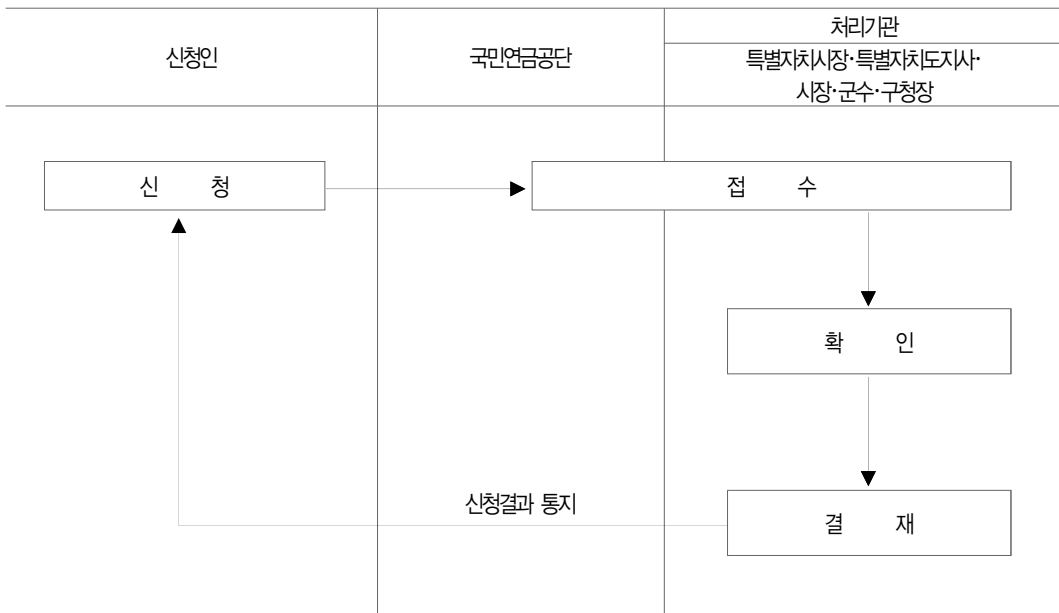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 의 사 항

기초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식12호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정기준 지급순위 [] 배우자 : 1순위 [] 자녀(배우자 포함) : 2순위 [] 부모 : 3순위 [] 손자녀(배우자 포함) : 4순위			동순위자 ()명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미지급 기초연금 내역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주소				
	사망일		청구액	미지급 기간 ()개월 [년 월 ~ 년 월]	
동순위 수급권자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선정	
				선정일자	서명 또는 인
	①				
	②				
	③				
	④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구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뒤쪽 작성방법 3.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3. 동순위자 : () 4. 기타 :

24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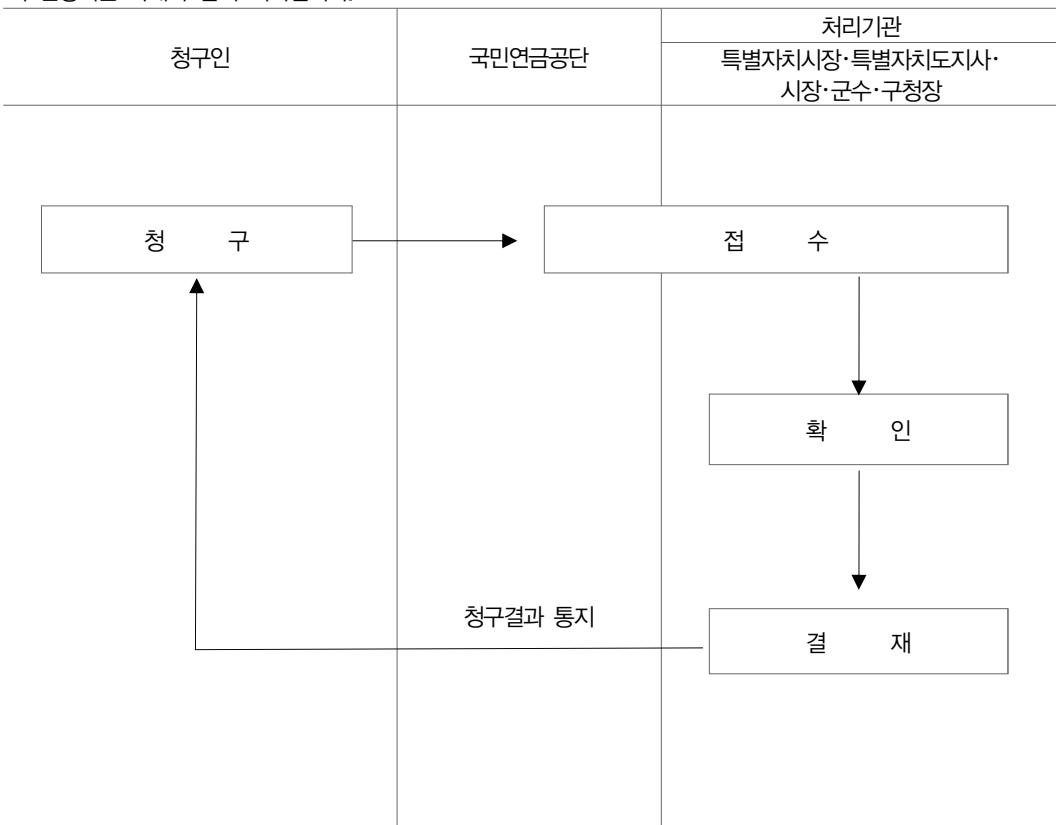
(뒤쪽)

작성 방법

1.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2. 지급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은 입출금이 가능한 청구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로서 지급받는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입니다.
4. 지급순위가 2명 이상 동순위일 경우에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실 분이 개별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순위 수급권자가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대표자 선정”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동순위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4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Ⅰ 서식13호 Ⅰ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〳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수급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권 상실사유	☐ 사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 직역연금 수급권자(배우자 포함)		상실사유 발생일

※ 아래란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대리인 또는 신고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계
	주소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수수료 없음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직원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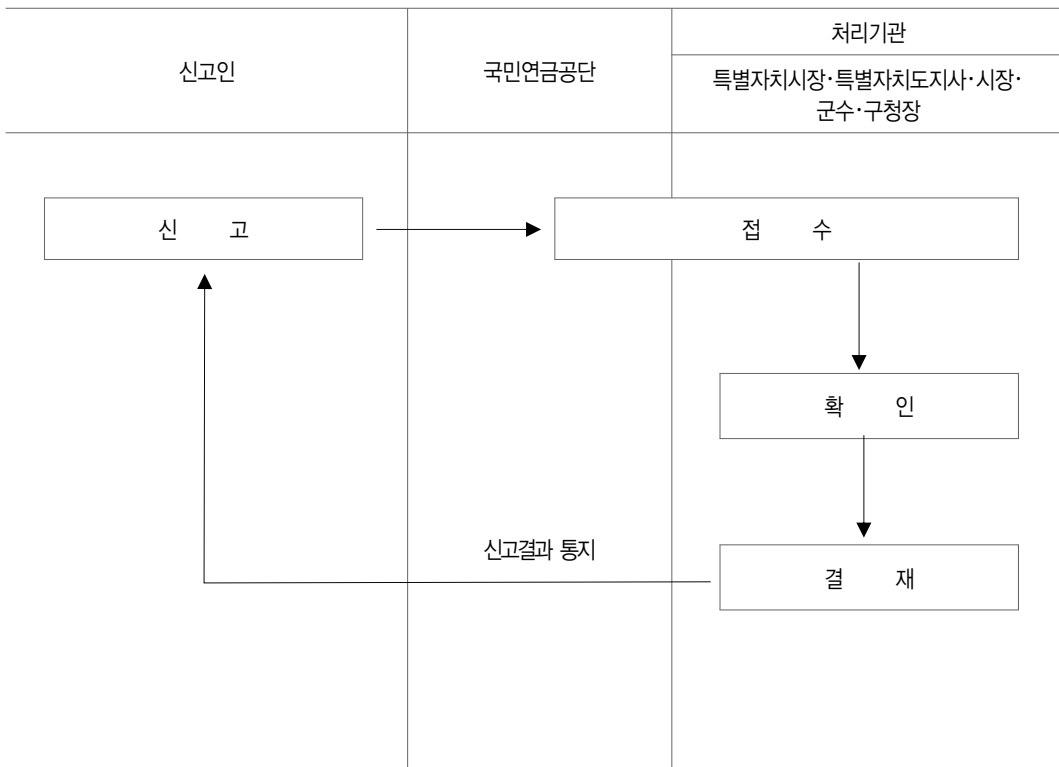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4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식14호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 기초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 기초연금액 변경 ☐ 기 타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 귀하의 기초연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성명)

문의전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15호 ■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시 군 구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년도	
											월	
수급자 현황	명	성·연령별 수급자 현황				수급자변동현황		예산집행 현황		비고		
	전월대비 증 감 율	연 령	남	여	계							
노인단독		65~69세				신규		국 비				
		70~74세				정지		시·도비				
		75~79세				상실		시·군·구 비				
노인 부부	1인 수급	80세 이상				전입		합계				
	2인 수급	계				전출		집행율 (%)				
수급자 명단												
일련 번호	수급자 이 름	주민등록 번호	읍·면·동	소 득 인정액	지 급 내 역							
					최초 지급일	지급액	감액사유	지급내역 변동 사유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서식16호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

수신 : 〇〇〇 읍·면·동 주민센터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〇〇지사장

제 목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연락처	집 (사무실)
		실제 거주지			H·P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

※ 실제 거주지 : 신청 접수시 상담내역에 의거 실제 거주지 읍·면·동 관내의 구체적인 거주지역을 적시하여 기재

위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호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로서 「기초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읍·면·동)의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향후 급여 지급 등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오니, 매월 15일까지 귀 읍·면·동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근거: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하신 후, 그 결과를 아래 FAX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공무원) : 직급 성명

연락처 :

FAX :

년 월 일

○○○ 읍·면·동 주민센터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Ⅰ 서식17호 Ⅰ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

수신 : 〇〇〇 읍·면·동 주민센터장

제목 :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

거주불명 등록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연락처	집 (사무실)	
		실제거주지			H·P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기타 생활상태					

※ 행정상 관리주소 : 거주불명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재

※ 실제 거주지 : 수급자로 결정(변경신고)된 후 행정상 관리주소지 읍·면·동에서 통보한 실제 거주지 기재

※ 실제 거주지 거주여부 : 실제 거주지에 수급자 본인의 거주여부를 파악하여 ○, ×로 표시하고,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거주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 기타 생활상태 : 친·인척 왕래, 기타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기재

※ 유의사항 : 대상자가 사회적 약자인 점과 개인정보 보호측면 등을 고려하여 거주사실 등 파악시 안부를 묻는 형식으로 조심성 있게 접근하여 진행오해할 만한 불필요한 질문 삼가)

「기초연금법」 제1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거주사실 파악 결과를 통보합니다.

거주확인기관 : 〇〇〇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〇〇지사

확인자(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 ○ ○ ○ (서명)

년 월 일

〇〇〇 읍·면·동 주민센터장 또는 국민연금공단 〇〇지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Ⅰ 서식19호 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신청자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배우자 _____와 _____년부터 ____년째 ☐ 사실상 혼인, ☐ 사실상 이혼 관계이며, 추후 「기초연금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 수급자로 보장비용징수 및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자(수급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사실상 혼인(이혼) 관계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관 계 : _____ 연락처 : _____ 확인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_____ 주 소 : _____ 관 계 : _____ 연락처 : _____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식21호 ■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6.6.30.〉

현장 조사서	
조 사 대 상	
조 사 목 적	
조 사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 사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
조 사 의 범 위	
관 계 법 령	
제 출 자 료	
기 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서식22호 ■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8.6.20〉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위 임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발급증명서 종류	☐ 수급자 증명서 (발급통수 :) ☐ 장애인 증명서 (발급통수 :)					
본인의 해당 증명서 발급을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항제1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주소 :							
피 청 정 대 리 인 동 의	(성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후견인 등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와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증명서를 발급받으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 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파양정후견인 또는 파생년후견인의 증명서를 위임하여 발급 받으자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 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거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은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중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함)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에 한하여, 위임받은자가 분리가족의 구성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8. 법정대리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1

부 록

-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 III.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 IV.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 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CHAPTER

I

국민연금 급여 안내

가. 목적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급여 종류

-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분류

종 류		내 용
연금 급여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가입자였던)자가 급여지급연령 도달 시 지급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가입자였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지급(단,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가입자였던)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 급여	반환일시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사망, 국외이주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한꺼번에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

다. 국민연금액 산정

$$\text{연금액(年)} = \text{기본연금액} \times \text{연금종류별 지급률} + \text{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소득대체율(2021년 43.5%), 국민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3년치 평균소득, 본인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으로 결정

주의 기본연금액 산정방식

-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균등부분(A값), 소득비례부분(B값), 가입기간에 의해 결정

$$\text{기본연금액(年)} = \text{비례상수(A+B)}(1+0.05N)$$

- 비례상수 : 소득대체율* 43.5%(2021년)를 의미하는 비례상수, 매년 0.5%p(비례상수는 0.015)씩 인하되어 2028년 이후 40%(비례상수 1.2)
- * 40년 가입기준으로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연금액 비율
- A값(균등부분) : 국민연금 수급 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치 평균액
- B값(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수요를 보충해 줌으로써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생계를 위해 마련된 부가급여임

※ (2021년 1월~12월 기준) 배우자 : 연 263,060원, 자녀·부모 : 연 175,330원

라. 물가 연동

- 매년 물가상승률을 국민연금액에 반영하여 국민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존

※ (2016년) 0.7% → (2017년) 1.0% → (2018년) 1.9% → (2019년) 1.5% → (2020년) 0.4% → (2021년) 0.5%

마. 수급 연령

- 1998년 국민연금 개혁 결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 65세에 수급(2034년 이후)

〈출생연도별 수급 연령〉

출생연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노령연금 수급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수급 연령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바. 수급요건 및 급여지급 수준

급여종류		수급요건	급여지급 수준
노령연금	노령연금	- 급여지급연령 도달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20년미만(이상) 가입시 1년당 5%씩 감액(증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급여지급연령 도달 이후 최장 5년간 소득이 있는 때	- 연령에 따라 감액지급률 적용(2015.7.28.이전) - 월평균 소득초과액에 따라 감액(2015.7.29.이후)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 소득이 없는 때	-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미도달한 1년당6% 감액 지급 - 5년(70%), 4년(76%), 3년(82%), 2년(88%), 1년(94%)
	특례노령연금	60세 도달 -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특례 적용	- 급여산식에 따른 연금액 - 5년 기준 25%, 1년당 5%씩 증액
	분할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가 급여지급연령에 도달한 때 또는 수급권발생 이후 이혼한 때 (5년이상 혼인에 한함)	배우자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거나 당사자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 결정 가능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였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 장애등급(1~3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60% 지급 - 장애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입(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일시금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치 못하고 급여지급연령 도달, 가입(였던)자 사망, 국외이주 ※ 희망 시 60세 청구 가능	납부보험료에 일정이자 가산
	사망일시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때	Min(반환일시금 상당액, 사망일시금한도액)

사. 중복급여의 조정

1) 개요

- 동일인에게 둘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임

2) 대상

- 본인 또는 가족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급여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1인에게 2개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 본인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하거나(예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두 사람 이상의 가입기간을 기초로 2개 이상 급여가 발생한 경우(예 :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자녀의 사망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 적용급여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중복급여 조정의 대상이 아님
 -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 ‘장애의 중복조정’에 따름
- 분할연금
 - 분할연금과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과는 중복급여 조정대상임
 -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분할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급여 조정대상이 아님
 - 2개이상의 분할연금과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2개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하나의 수급권으로 보고 중복급여 조정함

3) 중복급여조정에 따른 급여지급

- (1) 원칙 :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
- (2) 예외 : 중복급여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
 - 다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때에는 반환일시금만 지급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
 - 선택한 급여에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함
 - 다만,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때에는 장애연금만 지급함

선발급여	후발급여		지급할 급여
노령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 + 분할연금
	장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반환일시금		노령(분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장애연금	노령(분할)연금		선택한 하나의 급여
	유족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반환일시금	본인기여	선택한 하나의 급여
		가족기여	장애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유족연금	노령(분할)연금		노령(분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장애연금		장애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중 선택
	유족연금		선택한 유족연금 +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30%
	반환일시금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반환일시금 중 선택

CHAPTER

II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가. 개요

-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나. 연계방식

- 각 연금제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각 개별연금 제도에 기초하여 급여를 각각 산정하여 지급

다. 적용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인자로, 2009년 8월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한 자에 한해 적용
- ※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예외 적용

라. 종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연계노령연금, 직역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연계 퇴직연금을 지급
- 수급자 사망 시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마. 지급시기

- 만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수급연령보다 늦을 경우 개별연금의 수급연령에 따름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출생연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국민연금(2013년 61세,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예정), 공무원·사학연금·별정우체국[60세 또는 정년 도달 시, 2010년(별정우체국은 2011년) 가입자부터는 65세], 군인연금(퇴역 시)

CHAPTER

Ⅲ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3. “공단지사”란 제2호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초연금의 위탁업무에 관하여는 기초연금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침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 위탁업무 처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지침 내용의 신설·변경·폐지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지침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① 수탁자는 이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 범위) ①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신청 등의 접수
 -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 다.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
- 2.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안내 및 기초연금 제도 홍보
 - 나.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다.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 3. 법 제11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요청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사
 - 가.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이혼관계 여부
 - 나. 사망의심자의 사망 여부
 - 다. 거주불명등록자 확인조사
 - 라. 타인계좌입금수급자 등의 대리수령 필요성 및 기초연금 사용용도 등
 - 마. 배우자의 부재(실종, 가출 등 행방불명) 여부
 - 바.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외국국적 배우자의 귀화허가 신청 여부
 - 사. 고령 수급자 수급권 확인
 - 아. 그 밖에 현장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
- 4.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
 - 나.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분석 및 제공 등 정책 지원
-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1항의 위탁업무 범위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업무 수행)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성과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상호협력)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지사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의 특별자치시, 시·군·구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읍·면·동은 특별자치시, 시·군·구를 통해 공단지사와 협력한다.

제9조(개인정보 제공·관리)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제6조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6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기초연금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확인조사) ① 수탁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책임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사자의 실명을 기재한 조사 결과를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가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및 지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계획 수립, 위탁업무 처리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탁자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 수탁자는 매 반기마다 사업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지침에 반영하고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외사항) 위탁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CHAPTER

IV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가. 기본 방향

-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연계를 통한 조사는 지자체, 현장조사가 필요한 중점관리 분야는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및 업무 효율화 추진

나. 개요

- 근거
 - 「기초연금법」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업무의 위탁)
 - 기초연금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및 보건복지부 연간 사업조사계획
- 조사대상
 - (중점확인조사) 보건복지부 연간조사계획 및 위탁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 인적사항 변동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대상
 - ※ 사실상 혼인·이혼관계,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지, 타인계좌 입금 수급자, 배우자 부재 여부, 외국국적 배우자 확인, 고령 수급자 수급권 확인 등
 - (수시확인조사) 시·군·구에서 현장확인 등 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행복e음」에 입력하여 전송
- 방법
 - 원칙적으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되 유선확인 병행
- 개인정보의 처리
 - 확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관련 증빙자료는 「행복e음」으로 스캔 송부 후 1년간 공단보관 후 파기

다. 조사체계

- (보건복지부) 연간조사 계획 수립, 지도·점검, 기초연금제도 개선 등 조사 지원

- (시·군·구)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조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지원) 및 수시조사 요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조사결과 확인 후 반영
- (국민연금공단) 중점·수시 확인조사실시 및 결과 통보 등
- (사회보장정보원) 공적자료 입수, 정비대상 자료 구축, 「행복e음」운영 및 교육 등 조사 지원

라. 업무흐름도



CHAPTER

V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021. 1. 5. 기준)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서울	서울북부 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17	서울 서대문구 총정로 36, 9층, 13층 총정로사옥 (총정로3가)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28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충무로3가)
	동대문중앙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556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복빌딩 (신설동)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815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반동)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46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82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송파	송파구	02-3433-584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92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 강동웨딩KDW (성내동)
	서울남부 지역본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17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 1~2층(논현동)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 (역삼동, 카이타워)
	서초	서초구	02-3415-0311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양재동)
	관악	관악구	02-6934-2021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415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33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강서	강서구	02-2086-7115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 3층 새싹타워 (마곡동)
	은평	은평구	02-350-5537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양천	양천구	02-6345-9028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용산	용산구	02-6220-2208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4층 LS용산타워 (한강로2가)
	동작	동작구	02-6935-8430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노량진동)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4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26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28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256	부산 북구 기차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42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73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43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54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대구	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053-589-4536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2층 (이곡동)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36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2본점)
	동대구	동구	053-430-7874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89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21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3, 5~6층
인천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917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구월동)
	서인천	서구	032-560-0400	인천 서구 서곶로 284, 3층 새터빌딩 (심곡동)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4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545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생명빌딩 (주안동)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29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층 (장기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광주	광 주 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062-958-2078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81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금남로5가)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29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세종	대전세종 지역본부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3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50(아름동) 1,4,5층
대전	서대전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933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탄방동)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59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선화동)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16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울산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64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57	울산 중구 변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경기	경 인 지역본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2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3층,4층,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2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자스퀘어 (호계동)
	성남	성남시	031-778-02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22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39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 삼성생명 (평택동)
	안산	안산시	031-481-7728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광명	광명시	02-2610-2868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융창빌딩 (철산동)
	부천	부천시	032-610-2360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542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46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로 7, 5층 (원흥동)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39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경기	구리남양주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031-550-5893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용인	용인시	031-288-1369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64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시흥	시흥시	031-488-2744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09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62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26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54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4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강원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74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포남동)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39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층 (퇴계동)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41	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무실동)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59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0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충남	천안	천안시	041-550-888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23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3층 대왕빌딩 (홍성읍)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87	충남 보령시 동천로 27,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동대동)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42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37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5층 동일타워 (예천동)
	아산	아산시	041-420-2342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3층 (온천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충북	청주	청주시	043-251-520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서문동)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40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금릉동)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47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23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교동)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22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목포사옥 (호남동)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11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73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여수	여수시	061-660-5529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16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전북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4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45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23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26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동충동)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15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경남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원군	055-278-901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지사 (신월동)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76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부원동)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15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광도면)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경남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2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1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한화생명빌딩 (석전동)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양산	양산시	055-371-1516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물금읍)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28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용현면)
경북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18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경주지사 (성동동)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83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22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17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18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송정동)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08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33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33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경산빌딩 (사정동)
제주	제주	제주시	064-720-4002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 제주사옥 (도남동)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32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

발 행 일 2021년 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문 의 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콜센터 1566-3232 (☎2번)

비매품

본 책은 보건복지부 업무용 지침으로 무단전재 및 무단인용을 금합니다.